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연혁집

제 2 권
어문·방송·영상
공공 분야



Contents

| | | |
|----|-------------|-----|
| 05 | 한국방송작가협회 | 001 |
| 06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035 |
| 07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089 |
| 08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103 |
| 09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119 |
| 10 | 한국언론진흥재단 | 135 |
| 11 | 한국문화정보원 | 183 |

05

한국방송작가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2020.02.14. 개정)
2. 연혁집(제정~제5차 개정)

1988년 09월 20일 제정 2006년 04월 06일 개정
 2001년 04월 25일 개정 2011년 12월 28일 개정
 2003년 06월 28일 개정 2020년 02월 1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약관)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사용요율 |
|--|------------|
| 한국방송공사 (KBS) (주)문화방송 (MBC) | 기본극본료의 30% |
| (주)서울방송 (SBS) 교육방송공사 (EBS) | 기본극본료의 25% |
| (주)경인방송 (ITV) | 기본극본료의 20%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 기본극본료의 15% |

| 구분 | 사용요율 |
|-----------------------------|------|
|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제5조(네트방송 사용료) 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

- 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사용요율 |
|---|------------|
| (주) 문화방송 (MBC) | 기본극본료의 15%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 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

제6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가. 드라마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3.5%
 - 나.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3%
- *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4.5%

-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 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
 -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 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
 - *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
 - *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프로그램을 CD-ROM TITLE 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ROM TITLE 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 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3.5%
 - 나.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수입금의 4.5%
- 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 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순수익의 8%
3. 유·무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순수익의 8%
5. 위 2. 내지 4호까지의 순수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제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9조(방송 사용료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자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 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 칙 (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3차 개정 (2006.04.06., 신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제1조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제1조(계약의 체결)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 |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u>재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회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
| 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 | 제2조(계약의 체결) <u>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제3조 1. 협회에 대해 계약자가 지불해야할 저작물 사용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한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저작물 사용료의 지불장소는 협회 사무소 또는 수령자의 지정 은행계좌로 한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 〈삭 제〉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제2조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방송, 공연, 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정하되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제2조(저작물사용료 납부) ①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방송, 공연, 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정하되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저작물 사용료의 납부는 협회 사무소 또는 수령자의 지정 은행계좌로 한다. |
| 제3차 개정 (2006.04.06.) | 〈삭 제〉 |

제3조(계약 약관)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제4조 계약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u>제3조(계약의 해지)</u> 계약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 | <u>제3조(계약 약관)</u>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제5조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u>제4조(저작물사용보고서)</u>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 | 제4조(저작물 <u>이용보고서</u>) <u>이용자</u> 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5차 개정 (2020.02.14.) | 〈삭 제〉 |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4조(재방송료)

1. 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5%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p>제1절 방송사용료</p> <p>1. 재방송료</p> <p>1)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td> <td>기본극본료의 30%</td> </tr> <tr> <td>(주)서울방송(SBS)</td> <td>기본극본료의 25%</td> </tr> <tr> <td>(주)경인방송(ITV)</td> <td>기본극본료의 20%</td> </tr> <tr> <td>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td> <td>기본극본료의 15%</td> </tr> </tbody> </table> | 구 분 | 사 용 요 율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주)서울방송(SBS) | 기본극본료의 25%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 기본극본료의 15%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 | | | | | | | | |
| (주)서울방송(SBS) | 기본극본료의 25% | | | | | | | | | | |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 | |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table border="1" data-bbox="475 339 1239 479"> <thead> <tr> <th data-bbox="475 339 929 379">구 분</th> <th data-bbox="929 339 1239 379">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5 379 929 479">(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td> <td data-bbox="929 379 1239 479"></td> </tr> </tbody> </table> <p data-bbox="475 502 1248 612">2)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3)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p> | 구 분 | 사 용 요 율 |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 | | | | | |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 | | | | | | | | | | |
| <p data-bbox="179 950 425 1015">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p> | <p data-bbox="451 648 604 677">제5조(재방송료)</p> <p data-bbox="451 687 1248 791">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79 801 1243 1198"> <thead> <tr> <th data-bbox="479 801 933 840">구 분</th> <th data-bbox="933 801 1243 840">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9 840 933 910">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td> <td data-bbox="933 840 1243 910">기본극본료의 30%</td> </tr> <tr> <td data-bbox="479 910 933 980">(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td> <td data-bbox="933 910 1243 980">기본극본료의 25%</td> </tr> <tr> <td data-bbox="479 980 933 1029">(주)경인방송(ITV)</td> <td data-bbox="933 980 1243 1029">기본극본료의 20%</td> </tr> <tr> <td data-bbox="479 1029 933 1198">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방송</td> <td data-bbox="933 1029 1243 1198">기본극본료의 15%</td> </tr> </tbody> </table> <p data-bbox="451 1208 1248 1318">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 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p> | 구 분 | 사 용 요 율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방송 | 기본극본료의 15%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 | | | | | | | | |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 | | | | | | | | |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 | |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방송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 | |
| <p data-bbox="179 1516 425 1582">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p> | <p data-bbox="451 1347 604 1377">제5조(재방송료)</p> <p data-bbox="451 1387 1248 1491">1.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79 1500 1243 1753"> <thead> <tr> <th data-bbox="479 1500 933 1540">구 분</th> <th data-bbox="933 1500 1243 1540">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9 1540 933 1610">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td> <td data-bbox="933 1540 1243 1610">기본극본료의 30%</td> </tr> <tr> <td data-bbox="479 1610 933 1679">(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td> <td data-bbox="933 1610 1243 1679">기본극본료의 25%</td> </tr> <tr> <td data-bbox="479 1679 933 1753">(주)경인방송(ITV) 교육방송공사(EBS)</td> <td data-bbox="933 1679 1243 1753">기본극본료의 20%</td> </tr> </tbody> </table> | 구 분 | 사 용 요 율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주)경인방송(ITV)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0% | |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 | | | | | | | | |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 | | | | | | | | |
| (주)경인방송(ITV)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0%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data-bbox="476 339 1239 552"> <thead> <tr> <th data-bbox="481 345 932 379">구 분</th> <th data-bbox="936 345 1235 379">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81 385 932 546">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td> <td data-bbox="936 385 1235 546"> 기본극본료의 15% </td> </tr> </tbody> </table> <p data-bbox="448 578 1248 685"> 2.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3.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 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p> | | 구 분 | 사 용 요 율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 | | |
| <p data-bbox="179 1021 425 1085">제4차 개정 (2011.12.28., 일부개정)</p> | <p data-bbox="448 721 604 747">제5조(재방송료)</p> <p data-bbox="448 757 1248 862">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81 872 1239 1270"> <thead> <tr> <th data-bbox="481 878 932 912">구 분</th> <th data-bbox="936 878 1235 912">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81 918 932 984">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td> <td data-bbox="936 918 1235 984"> 기본극본료의 30% </td> </tr> <tr> <td data-bbox="481 990 932 1055">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td> <td data-bbox="936 990 1235 1055"> 기본극본료의 25% </td> </tr> <tr> <td data-bbox="481 1061 932 1105"> (주)경인방송(ITV) </td> <td data-bbox="936 1061 1235 1105"> 기본극본료의 20% </td> </tr> <tr> <td data-bbox="481 1111 932 1264">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td> <td data-bbox="936 1111 1235 1264"> 기본극본료의 15% </td> </tr> </tbody> </table> <p data-bbox="448 1284 1248 1389">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 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p> | | 구 분 | 사 용 요 율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5%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 | | | | | | | | | |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 | | | | | | | | | |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 | | |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 | | |
| <p data-bbox="179 1552 425 1616">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p> | <p data-bbox="448 1413 604 1439">제4조(재방송료)</p> <p data-bbox="448 1449 1248 1554">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81 1564 1239 1743"> <thead> <tr> <th data-bbox="481 1570 932 1604">구 분</th> <th data-bbox="936 1570 1235 1604">사 용 요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81 1610 932 1675">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td> <td data-bbox="936 1610 1235 1675"> 기본극본료의 30% </td> </tr> <tr> <td data-bbox="481 1681 932 1739">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td> <td data-bbox="936 1681 1235 1739"> 기본극본료의 25% </td> </tr> </tbody> </table> | | 구 분 | 사 용 요 율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 | |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30% | | | | | | | | | | | |
| (주)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 기본극본료의 25%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구 분 | 사 용 요 율 |
| | (주)경인방송(ITV) | 기본극본료의 20%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5% |
| <p>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p> <p>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 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p> | | |

제5조(네트워크 사용료)

- 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
- 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 사용요율 |
|---|------------|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 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p>제1절 방송사용료</p> <p>2. 네트방송 사용료</p> <p>'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p> <p>1)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해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문화방송(MBC)</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극본료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극본료의 11.5%</td> </tr> </tbody> </table> <p>2)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p> | 구 분 | 사용요율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 기본극본료의 11.5%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 기본극본료의 11.5% | | | | | |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제6조(네트방송 사용료)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p>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p> <p>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문화방송(MBC)</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극본료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방송</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극본료의 13%</td> </tr> </tbody> </table> <p>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p> | 구 분 | 사용요율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방송 | 기본극본료의 13%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방송 | 기본극본료의 13% | | | | | | |
| 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 | <p>제6조(네트방송 사용료)</p> <p>1.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p> <p>2.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해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문화방송(MBC)</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극본료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극본료의 13%</td> </tr> </tbody> </table> <p>3.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p> | 구 분 | 사용요율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 | | | | |
| 제4차 개정 (2011.12.28., 일부개정) | <p>제6조(네트방송 사용료)</p> <p>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p> <p>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54 339 885 389">구 분</th> <th data-bbox="891 339 1248 389">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4 389 885 435">(주)문화방송(MBC)</td> <td data-bbox="891 389 1248 435">기본극본료의 15%</td> </tr> <tr> <td data-bbox="454 435 885 608">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td> <td data-bbox="891 435 1248 608">기본극본료의 13%</td> </tr> </tbody> </table> | 구 분 | 사용요율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p>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p>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 | | | | | |
| <p>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p> | <p>제5조(네트방송 사용료)</p> <p>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p> <p>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54 956 885 1005">구 분</th> <th data-bbox="891 956 1248 1005">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4 1005 885 1051">(주)문화방송(MBC)</td> <td data-bbox="891 1005 1248 1051">기본극본료의 15%</td> </tr> <tr> <td data-bbox="454 1051 885 1224">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td> <td data-bbox="891 1051 1248 1224">기본극본료의 13%</td> </tr> </tbody> </table> | 구 분 | 사용요율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p>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p>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 (주)문화방송(MBC) | 기본극본료의 15% | | | | | | | |
| 부산방송(주),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광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강원민방 | 기본극본료의 13% | | | | | | | |

제6조(복제, 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 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가.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 나.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 *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
 -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
 - *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
 - *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프로그램을 CD-ROM TITLE 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ROM TITLE 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 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3.5%
 - 나.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 수입금의 4.5%
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협의하여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3. 복제, 배포 사용료 방송사등 저작물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p> <p>*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p> <p>* 본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프로그램을 CD ROM TITLE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 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 ROM TITLE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6)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협약에 의하여 정한다.</p> |
| <p>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p> | <p>제7조(복제, 배포 사용료)</p> <p>방송사 등 저작물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p> <p>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p>*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p> <p>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p> <p>*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p> <p>* 본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5) 프로그램을 CD ROM TITLE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 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 ROM TITLE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p> <p>*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3.5%</p> <p>*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 수입금의 4.5%</p> <p>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p> |
| <p>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p> | <p>제7조(복제, 배포 사용료)</p> <p>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p> <p>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p> <p>◦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p> <p>◦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p> <p>*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p> <p>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p> <p>*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p> <p>*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프로그램을 CD ROM TITLE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 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 ROM TITLE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p> <p>○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3.5%</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 수입금의 4.5%</p> <p>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p> |
| <p>제4차 개정 (2011.12.28., 일부개정)</p> | <p>제7조(복제, 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p> <p>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나.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p> <p>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 *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 *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프로그램을 CD-ROM TITLE 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ROM TITLE 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3.5% 나.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 수입금의 4.5%</p> <p>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협의하여 정한다.</p> |
| <p>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p> | <p>제6조(복제, 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p> <p>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나.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 (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p> <p>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p> <p>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p> <p>*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p> <p>*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프로그램을 CD-ROM TITLE 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ROM TITLE 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p> <p>*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ROM TITLE 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p> <p>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3.5%</p> <p>나.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 수입금의 4.5%</p> <p>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협약하여 정한다.</p> |

제7조(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3. 유·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5. 위 2내지 4호까지의 순수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03.06.28., 신설) | <p>제8조(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3) PC통신, 인표샵, 유·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5) 위 2) 내지 4)항까지의 순수이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
| 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 | <p>제8조(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3. 유·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5. 위 2내지 4호까지의 순수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 | <p>제7조(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3. 유·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5. 위 2내지 4호까지의 순수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4. 기타방송 사용료 다음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정한 사용료 금액과 다른 사용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본 규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u>제9조(기타방송 사용료)</u>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정한 사용료 금액과 다른 사용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본 규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
| 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 | 제9조(기타방송 사용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이규정에</u> 정한 사용료 금액과 다른 사용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u>이용하는 경우</u>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u>이 규정을</u> 따를 수 없는 경우 |
| 제5차 개정 (2020.02.14.) | 〈삭 제〉 |

제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제2절 기타 사용료 1. 종합유선방송, 공연, 기타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제1절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신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u>제11조(기타 사용료)</u> 종합유선방송, 공연, 기타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제1절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신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
| 제3차 개정 (2006.04.06., 전부개정) | <u>제11조(기타 사용료)</u> <u>제1절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그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u> |
| 제5차 개정 (2020.02.14., 전부개정) | <u>제8조(기타 사용료)</u> <u>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u> |

제9조(방송 사용료 등의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자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건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되는 경우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p>제2절 기타 사용료</p> <p>2. 방송사가 다음의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사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건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되는 경우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p><u>제10조(방송사용료면제)</u></p> <p>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녹화·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사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건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되는 경우 |
| 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 | 제10조(방송사용료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건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되는 경우 |
| 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 | 제9조(방송 사용료 등의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자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건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되는 경우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부 칙(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0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1988.09.20., 제정 | 부 칙(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1차 개정 (2001.04.25., 일부개정) | 부 칙(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차 개정 (2003.06.28., 일부개정) | 부 칙(1988.09.2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06.28)</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개정 (2006.04.06.,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1988.09.20)</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1.04.25)</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06.28)</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6.04.06)</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개정 (2011.12.28.,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1988.09.20)</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1.04.25)</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06.28)</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6.04.06)</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1.12.28)</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개정 (2020.02.14.,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1988.09.20)</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1.04.25)</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06.28)</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6.04.06)</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1.12.28)</p> <p>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0.02.14)</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06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2024.04.03. 개정)
2. 연혁집(제정~제7차 개정)

| | |
|------------------|------------------|
| 2000년 11월 14일 제정 | 2017년 02월 08일 개정 |
| 2007년 10월 11일 개정 | 2021년 01월 19일 개정 |
| 2009년 11월 09일 개정 | 2021년 05월 24일 개정 |
| 2012년 11월 30일 개정 | 2024년 04월 03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계약) ①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1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3조(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4. 방송, 영상, 공연 등
5. 광고, 홍보 등
6. 기타

제2장 복사사용료

제4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 등의 복사이용에 대한 복사기 1대당 연간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조정계수 | 0.6 | 0.8 | 1.0 |

3. 연간 복사사용량은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항목 | 단위 | 유인복사기 | 무인복사기 |
|--------------|----|--------------------|-------|
| 1) 1일 복사량 | 면수 | 800면 | 160면 |
| 2) 저작물 복사 비율 | % | 50 | 25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0 | |
| 4) 연간 영업 월수 | 월 | 9 | |
| 5) 점포등급(*) | % | 100,90,80,70,60,50 | |
| 6) 영리 비영리 | % | 영리 100 / 비영리 : 60 | |

*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의 1) 소재지, 2) 설치장소, 3) 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 (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 항목 | 분류 | 배점 |
|---------|----------------------|-----|
| 1) 소재지 | 특별시 및 광역시 | 100 |
| |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 90 |
| | 특례시, 시청소재지 | 70 |
| | 군지역 및 기타 | 50 |
| 2) 설치장소 | 종합대학, 일반대학 | 100 |
| | 기능목적대학 | 90 |
| |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 70 |
| | 대학가 주변 영리 | 50 |
| 3) 설치위치 | 중앙도서관 | 100 |

| 항목 | 분류 | 배점 |
|----|--------------------|----|
| |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 건물 내) | 90 |
| | 학생회관 | 70 |
| |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 50 |

제5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총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3. 연간 총 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 복사사용량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 관리부서 등 |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 10원 × 복사량

제6조(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20원으로 한다.

제3장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7조(단행본, 전집, 선집류 복제·배포) 협회 관리저작물의 전편을 사용하여 단행본, 전집, 선집을 발행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가. 도서정가 × 인세율 × 발행부수

나. 도서정가 × 인세율 × 판매부수

〈인세율〉

| 복제·배포 부수 | 인세율(%) |
|-----------|--------|
| 3,000부 이하 | 10 |

* 3,000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인세율을 정한다.

제8조(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3년)〉

| 구간 | 이용량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부 이하 | | 76,870 | 61,49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199,850 |
| 3,001부 ~ 1만부 이하 | | 83,860 | 67,08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218,020 |
| 1만1부~ 2만부 이하 | | 90,840 | 72,67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236,190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2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용어의 정의(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 운문류 |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
|-----|---|
| 소설류 |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동화 |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산문류 |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제9조(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 구간 | 이용량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부 이하 | 27,210 | 22,410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70,760 | |
| 3,001부 ~ 1만부 이하 | 29,800 | 24,550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77,500 |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학습참고서형 도서란 서책형 도서 중,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과 관련 학습서, 참고서, 문제집, 지도서, 연구서, 기타 유사한 부류의 도서를 포함함

제10조(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1컷, 원)〉

| 구간 | 이용량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 | | 3년 | 1년 |
| 3,000부 이하 | | 142,700 | 50,400 |
| 3,001부~1만부 이하 | | 155,670 | 55,200 |
| 1만1부~2만부 이하 | | 168,640 | - |

* 2만부(학습참고서형은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학습참고서형은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이미지 저작물이란 미술, 사진, 만화, 삽화, 도안,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제4장 전송사용료

제11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저작물의 판매량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 ×30%이내 |
| 회원제 서비스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매출액×30%이내×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

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3년)〉

| 이용자 | 이용량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명 이하 | | 63,800 | 51,030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165,880 |
| 3,001명 ~ 1만명 이하 | | 69,600 | 55,670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180,960 |
| 1만1명~ 2만명 이하 | | 75,400 | 60,310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196,040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2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2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를 말한다. 단,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같다.)

제13조(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어문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 이용자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명 이하 | 22,680 | 18,68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58,960 |
| 3,001명 ~1만명 이하 | 24,840 | 20,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64,580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4조(이미지 저작물 등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 이용자 | 이용량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 | | 3년 | 1년 |
| 3,000명 이하 | | 118,440 | 42,000 |
| 3,001명~1만명 이하 | | 129,200 | 46,000 |
| 1만1명~2만명 이하 | | 139,970 | - |

* 2만명(학습참고서형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만1명(학습참고서형은 1만1명) 이상 이용자는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5장 방송, 영상, 공연 등 사용료

제15조(방송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방송용 등 영상물의 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상물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영화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화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공연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공연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장 광고, 홍보 등 사용료

제19조(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 ① 협회 관리저작물의 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1용도, 1년 사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본 사용료(단위: 원)〉

| 구분 | 윤문 | |
|----|---------|---------|
| | 사용단위 | 0.5~1편 |
| 금액 | 150,000 | 100,000 |

〈유형별 사용용도 계수(단위: %)〉

| 용도 | 상세용도 | 계수 | 사용용도 계수 |
|--------------|---|-----|---------|
| 온라인 세트 | 홈페이지, 웹/모바일/앱 배너광고, 이메일, E-카다로그, 전자브로슈어,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앱 페이지 및 아이콘 탑재용 개인 휴대 전자제품(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 1용도 | 100 |
| | | SET | 250 |
| 홍보판촉 세트(인쇄) | 브로슈어, DM, 카다로그, 팸플렛, 전단지, 봉투, 사외용 기업, 리포트/보고서(연차보고서 등) | 1용도 | 130 |
| | | SET | 250 |
| 사내용세트·실내 전시 | 사내배포용 브로슈어, 뉴스레터, 교육자료, 포트/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웹진 및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사내 디스플레이, 포스터, 벽면장식(비광고성, 실내용), 박물관 디스플레이 (비광고성, 비영리/교육목적의 전시회에 한함), 액자용 인화(사내 및 개인소장용) | 1용도 | 100 |
| | | SET | 250 |
| 캘린더 | 홍보판촉용 캘린더 (탁상용, 벽걸이) | 1용도 | 150 |
| | 판매용 캘린더 | 1용도 | 250 |
| TV 광고(CF) | 중앙방송(KBS, MBC, SBS, EBS), 지방방송, 케이블방송, IPTV, 인터넷방송 | 1용도 | 300 |
| 광고용세트(인쇄/옥외) | 신문광고, 잡지광고, 신문/잡지 속 전단광고, 옥외광고, 차량광고, 디스플레이(포스터, POP, 디스플레이), 지하철역사내광고, 자판기/현금인출기/노래방기기/티켓발권기 등의 전자화면, 극장 스크린 | 1용도 | 200 |
| | | SET | 600 |

| 용도 | 상세용도 | 계수 | 사용용도 계수 |
|-------|--|-----|------------|
| | 광고, 전화번호부/디렉토리 광고 | | |
| 옥외 전시 | 옥외에 디스플레이, 판넬, 벽면 등에 불특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 1용도 | 200 |

② 다만, 동일 저작물을 2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가 낮은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50% 추가적인 할인계수를 적용한다. 2개 용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할인 계수를 적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용자가 사용 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 후 3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규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차 개정 (2007.10.1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차 개정 (2012.11.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5차 개정 (2021.01.1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차 개정 (2021.05.2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제2조(계약의 문서화)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센터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1차 개정 (2007.10.11., 일부개정) | 제2조(계약의 문서화)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2차 개정 (2009.11.09., 일부개정) | 제2조(계약의 체결)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5차 개정 (2021.01.19.) | 〈삭 제〉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제3조(계약 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
| 제5차 개정 (2021.01.19.) | 〈삭 제〉 |

제2조(이용계약)

- ①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1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본 규정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2조(이용계약) ①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1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

제3조(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4. 방송, 영상, 공연 등
5. 광고, 홍보 등
6. 기타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제4조(이용 구분)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복사 2. 전송 3. 기타 |
| 제1차 개정 (2007.10.11., 일부개정) | 제4조(이용 구분)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복사 2. 전송 3. 기타 |
| 제5차 개정 (2021.01.19., 일부개정) | 제2조(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
| 제6차 개정 (2021.05.24., 일부개정) | 제2조(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4. 기타 |
| 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 | 제3조(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4. <u>방송, 영상, 공연 등</u> 5. <u>광고, 홍보 등</u> 6. <u>기타</u>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p>제5조(저작권사용료)</p> <p>①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자는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사용료로서 개별허락(본 센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1호의 계약을 말한다)의 사용료의 상한은 저작물의 종류와 복사 전송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도서 및 학위논문</p> <p style="margin-left: 40px;">1) 복사 : 1면당 5원</p> <p style="margin-left: 40px;">2) 전송 : 1면당 10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간행물</p> <p style="margin-left: 40px;">3) 복사 : 도서와 같음</p> <p style="margin-left: 40px;">4) 전송 : 10면 기준 1건당 500원 기본료, 추가 1면당 10원</p> <p style="margin-left: 20px;">다. 사진·미술·음악 저작물</p> <p style="margin-left: 40px;">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p> <p>③ 전항의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트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p> <p>④ 제2항의 사용료는 저작권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p> <p>⑤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는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 규모', '이용의 영리, 비영리성',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복사기 대수', '종업원 수'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⑥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복사, 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
| 제1차 개정 (2007.10.11., 일부개정) | <p>제5조(저작권사용료)</p> <p>①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자는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사용료로서 개별허락(본 협회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1호의 계약을 말한다)의 사용료의 상한은 저작물의 종류와 복사 전송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도서 및 학위논문</p> <p style="margin-left: 40px;">1) 복사 : 1면당 5원</p> <p style="margin-left: 40px;">2) 전송 : 1면당 10월</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간행물</p> <p>3) 복사 : 도서와 같음</p> <p>4) 전송 : 10면 기준 1건당 500원 기본료, 추가 1면당 10원</p> <p>다. 사진·미술·음악 저작물</p> <p>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p> <p>③ 전항의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트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p> <p>④ 제2항의 사용료는 저작권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p> <p>⑤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는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 규모', '이용의 영리, 비영리성', '이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복사기 대수', '종업원 수'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⑥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복사, 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
| 제2차 개정 (2009.11.09.) | 〈삭 제〉 |

제2장 복사사용료

제4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 등의 복사이용에 대한 복사기 1대당 연간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조정계수 | 0.6 | 0.8 | 1.0 |

3. 연간 복사사용량은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항목 | 단위 | 유인복사기 | 무인복사기 |
|--------------|----|--------------------|-------|
| 1) 1일 복사량 | 면수 | 800면 | 160면 |
| 2) 저작물 복사 비율 | % | 50 | 25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0 | |
| 4) 연간 영업 월수 | 월 | 9 | |
| 5) 점포등급(*) | % | 100,90,80,70,60,50 | |
| 6) 영리 비영리 | % | 영리 100 / 비영리 : 60 | |

*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의 1)소재지, 2)설치장소, 3)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 항목 | 분류 | 배점 |
|---------|----------------------|-----|
| 1) 소재지 | 특별시 및 광역시 | 100 |
| |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 90 |
| | 특례시, 시청소재지 | 70 |
| | 군지역 및 기타 | 50 |
| 2) 설치장소 | 종합대학, 일반대학 | 100 |
| | 기능목적대학 | 90 |
| |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 70 |
| | 대학가 주변 영리 | 50 |
| 3) 설치위치 | 중앙도서관 | 100 |
| |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 건물 내) | 90 |
| | 학생회관 | 70 |
| |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 50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제2차 개정 (2009.11.09., 신설) | 제5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는 년간의 사용료 계약을 포괄허락계약(본 협회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2호의 계약을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 | | | |
| | 1. 유인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 | | | |
| |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 | | |
| | 항 목 | 수 치 | 산정근거 | 비 고 |
| | 1) 저작권 사용료 | 5원 | 1면당 5원 | |
| | 2) 대당 1일 복사량 | 면 | 800면 기준 | |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5일 기준 | |
| | 4) 년 영업 일수 | 월 | 9월 기준 | |
| | 5) 저작물 복사 비율 | % | 50% 기준 | |
| | 6) 점포 등급 | % | 100,90,80,70,60,50 | |
| 7) 영리 비영리 | % | 영리 : 100, 비영리 : 60 | | |
| 8) 복사기 대수 | 대 | | | |
| 2. 무인복사기 저작권사용료 | | | | |
|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 | | | |
| 항 목 | 수 치 | 산정근거 | 비 고 | |
| 1) 저작권 사용료 | 5원 | 1면당 5원 | | |
| 2) 대당 1일 복사량 | 면 | 160면 기준 | |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5일 기준 | | |
| 4) 년 영업 일수 | 월 | 9월 기준 | | |
| 5) 저작물 복사 비율 | % | 25% 기준 | | |
| 6) 점포 등급 | % | 100,90,80,70,60,50 | | |
| 7) 영리 비영리 | % | 영리 : 100, 비영리 : 60 | | |
| 8) 복사기 대수 | 대 | | | |
| [점포등급표] 상기 유·무인 복사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며, 점포 등급은 1),2),3)항의 곱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10미만의 단수는 절삭) | | | | |
| 항목 | 분류 | 배점 | 비고 | |
| 1) 소재지 | - 특별시 및 광역시 | 100 | | |
| | - 도청소재지 | 90 |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70 | | |
| | - 시청소재지 | 50 | | |
| | - 군 지역 및 기타 | 50 | | |
| 2) 설립목적 | - 종합대학, 일반대학 | 100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분류 | 배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목적대학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가 주변 영리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설치위치 | - 중앙도서관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과대도서관[단과건물내]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회관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 주변]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3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의 연간의 복사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유인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p> <p>* 연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 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산정근거</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 저작권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면당 5원</td> <td></td> </tr> <tr> <td>2) 대당 1일 복사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면 기준</td> <td></td> </tr> <tr> <td>3) 월 영업 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 기준</td> <td></td> </tr> <tr> <td>4) 년 영업 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9월 기준</td> <td></td> </tr> <tr> <td>5) 저작물 복사 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기준</td> <td></td> </tr> <tr> <td>6) 점포 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90,80,70,60,50</td> <td></td> </tr> <tr> <td>7) 영리 비영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 리 : 100, 비영리 : 60</td> <td></td> </tr> <tr> <td>8) 복사기 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무인복사기 저작권사용료</p> <p>* 연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 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산정근거</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 저작권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면당 5원</td> <td></td> </tr> <tr> <td>2) 대당 1일 복사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면 기준</td> <td></td> </tr> <tr> <td>3) 월 영업 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 기준</td> <td></td> </tr> <tr> <td>4) 년 영업 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9월 기준</td> <td></td> </tr> <tr> <td>5) 저작물 복사 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기준</td> <td></td> </tr> <tr> <td>6) 점포 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90,80,70,60,50</td> <td></td> </tr> <tr> <td>7) 영리 비영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 리 : 100, 비영리 : 60</td> <td></td> </tr> <tr> <td>8) 복사기 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점포등급표] 상기 유·무인 복사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를</p> | | | | 항 목 | 수 치 | 산정근거 | 비 고 | 1) 저작권 사용료 | 5원 | 1면당 5원 | | 2) 대당 1일 복사량 | 면 | 800면 기준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5일 기준 | | 4) 년 영업 일수 | 월 | 9월 기준 | | 5) 저작물 복사 비율 | % | 50% 기준 | | 6) 점포 등급 | % | 100,90,80,70,60,50 | | 7) 영리 비영리 | % | 영 리 : 100, 비영리 : 60 | | 8) 복사기 대수 | 대 | | | 항 목 | 수 치 | 산정근거 | 비 고 | 1) 저작권 사용료 | 5원 | 1면당 5원 | | 2) 대당 1일 복사량 | 면 | 160면 기준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5일 기준 | | 4) 년 영업 일수 | 월 | 9월 기준 | | 5) 저작물 복사 비율 | % | 25% 기준 | | 6) 점포 등급 | % | 100,90,80,70,60,50 | | 7) 영리 비영리 | % | 영 리 : 100, 비영리 : 60 | | 8) 복사기 대수 | 대 | | |
| 항 목 | 수 치 | 산정근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저작권 사용료 | 5원 | 1면당 5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당 1일 복사량 | 면 | 800면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5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년 영업 일수 | 월 | 9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저작물 복사 비율 | % | 50%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점포 등급 | % | 100,90,80,70,6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영리 비영리 | % | 영 리 : 100, 비영리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복사기 대수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 | 수 치 | 산정근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저작권 사용료 | 5원 | 1면당 5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당 1일 복사량 | 면 | 160면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5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년 영업 일수 | 월 | 9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저작물 복사 비율 | % | 25%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점포 등급 | % | 100,90,80,70,6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영리 비영리 | % | 영 리 : 100, 비영리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복사기 대수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차 개정 (2021.01.19., 일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기준으로 하며, 점포 등급은 1),2),3)항의 곱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10미만의 단수는 절삭) | | | |
| | 항목 | 분류 | 배점 | 비고 |
| | 1) 소재지 | - 특별시 및 광역시 | 100 | |
| | | - 도청소재지 | 90 | |
| | | -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 | |
| | | - 시청소재지 | 70 | |
| | | - 군 지역 및 기타 | 50 | |
| | 2) 설립목적 | - 종합대학, 일반대학 | 100 | |
| | | - 기능목적대학 | 90 | |
| | | -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 70 | |
| | | - 대학가 주변 영리 | 50 | |
| | 3) 설치위치 | - 중앙도서관 | 100 | |
| | | - 단과대도서관[단과건물내] | 90 | |
| | | - 학생회관 | 70 | |
| | | -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 주변] | 50 | |
| 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 | 제4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 등의 복사이용에 대한 복사기 1대당 연간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 | |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조정계수 | 0.6 | 0.8 | 1.0 |
| | 3. 연간 복사사용량은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
| | 항목 | 단위 | 유인복사기 | 무인복사기 |
| | 1) 1일 복사량 | 면수 | 800면 | 160면 |
| | 2) 저작물 복사 비율 | % | 50 | 25 |
| | 3) 월 영업 일수 | 일 | 20 | |
| | 4) 연간 영업 월수 | 월 | 9 | |
| | 5) 점포등급(*) | % | 100,90,80,70,60,50 | |
| | 6) 영리 비영리 | % | 영리 100 / 비영리 : 60 | |
| | *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의 1)소재지, 2)설치장소, 3)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항목 | 분류 | 배점 |
| | 1) 소재지 | 특별시 및 광역시 | 100 |
| | |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 90 |
| | | 특례시, 시청소재지 | 70 |
| | | 군지역 및 기타 | 50 |
| | 2) 설치장소 | 종합대학, 일반대학 | 100 |
| | | 기능목적대학 | 90 |
| | |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 70 |
| | | 대학가 주변 영리 | 50 |
| | 3) 설치위치 | 중앙도서관 | 100 |
| | |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건물내) | 90 |
| | | 학생회관 | 70 |
| | |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 50 |

제5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총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3. 연간 총 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text{연간 총 복사사용량} = \text{① 직종인원수} \times \text{복사량} + \text{② 직종인원수} \times \text{복사량} + \text{③ 직종인원수} \times \text{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연간) | 비고 |
|----------|-------------|------------|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text{저작물 사용료} = 10\text{원} \times \text{복사량}$$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제2차 개정 (2009.11.09., 신설) | <p>제6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p> <p>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복사사용료는 년간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허락계약 의하여 체결한다.</p> <p>② 저작권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 연간 저작권사용료 =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직종인원수 × 복사량) × 면당복사사용료 5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직종구분</th> <th>복사량(1인당, 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일반직</td> <td>200면</td> <td>영업·관리부서 등</td> </tr> <tr> <td>② 연구·기획직</td> <td>1,000면</td> <td>연구실·기획부서 등</td> </tr> <tr> <td>③ 기능직</td> <td>100면</td> <td>기능직부서</td> </tr> </tbody> </table>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 | | | | | | | | | |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 | | | | | | | | | |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 | | | | | | | | | |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 | | | | | | | | |
| 제4차 개정 (2017.02.08., 일부개정) | <p>제6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p> <p>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복사사용료는 연간 포괄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 연간 저작권사용료 =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직종인원수 × 복사량) × 면당복사사용료 5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직종구분</th> <th>복사량(1인당, 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일반직</td> <td>200면</td> <td>영업·관리부서 등</td> </tr> </tbody> </table>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 | | | |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 | | | | | | | | | |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data-bbox="458 343 1245 459"> <thead> <tr> <th>직종구분</th> <th>복사량(1인당, 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② 연구·기획직</td> <td>1,000면</td> <td>연구실·기획부서 등</td> </tr> <tr> <td>③ 기능직</td> <td>100면</td> <td>기능직부서</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복사량 × 면당 5원</p> |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 | | | | | | | | | | | |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 | | | | | | | | | | | |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 | | | | | | | | | | |
| <p>제5차 개정 (2021.01.19., 일부개정)</p> | <p>제4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p> <p>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연간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저작권사용료 =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직종인원수 × 복사량) × 면당복사사용료 5원</p> <table border="1" data-bbox="458 777 1245 932"> <thead> <tr> <th>직종구분</th> <th>복사량(1인당, 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일반직</td> <td>200면</td> <td>영업·관리부서 등</td> </tr> <tr> <td>② 연구·기획직</td> <td>1,000면</td> <td>연구실·기획부서 등</td> </tr> <tr> <td>③ 기능직</td> <td>100면</td> <td>기능직부서</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복사량 × 면당 5원</p> |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 | | | | | | | | | | | |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 | | | | | | | | | | | |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 | | | | | | | | | | | |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 | | | | | | | | | | |
| <p>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p> | <p>제5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 연간 총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는 10원으로 한다. 3. 연간 총 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 복사사용량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58 1379 1245 1534"> <thead> <tr> <th>직종구분</th> <th>복사량(1인당, 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일반직</td> <td>200면</td> <td>영업·관리부서 등</td> </tr> <tr> <td>② 연구·기획직</td> <td>1,000면</td> <td>연구실·기획부서 등</td> </tr> <tr> <td>③ 기능직</td> <td>100면</td> <td>기능직부서</td> </tr> </tbody> </table> <p>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 10원 × 복사량</p> |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직종구분 | 복사량(1인당, 연간) | 비고 | | | | | | | | | | | | | |
| ① 일반직 | 200면 | 영업·관리부서 등 | | | | | | | | | | | | | |
| ② 연구·기획직 | 1,000면 | 연구실·기획부서 등 | | | | | | | | | | | | | |
| ③ 기능직 | 100면 | 기능직부서 | | | | | | | | | | | | | |

제6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20원으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09.11.09., 신설) | 제7조(개인 등의 이용) ①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을 얻어 복사하는 경우에는 개별허락계약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이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
| 제5차 개정 (2021.01.19., 전부개정) | <u>제5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u>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
| 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 | <u>제6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u>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u>면당 20원으로</u> 한다. |

제3장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7조(단행본, 전집, 선집류 복제·배포) 협회 관리저작물의 전편을 사용하여 단행본, 전집, 선집을 발행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가. 도서정가 × 인세율 × 발행부수

나. 도서정가 × 인세율 × 판매부수

〈인세율〉

| 복제·배포 부수 | 인세율(%) |
|-----------|--------|
| 3,000부 이하 | 10 |

* 3,000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인세율을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p>제7조(단행본, 전집, 선집류 복제·배포) 협회 관리저작물의 전편을 사용하여 단행본, 전집, 선집을 발행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p> <p>가. 도서정가 × 인세율 × 발행부수</p> <p>나. 도서정가 × 인세율 × 판매부수</p> <p>〈인세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복제·배포 부수</th> <th>인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000부 이하</td> <td>10</td> </tr> </tbody> </table> <p>* 3,000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인세율을 정한다.</p> | 복제·배포 부수 | 인세율(%) | 3,000부 이하 | 10 |
| 복제·배포 부수 | 인세율(%) | | | | |
| 3,000부 이하 | 10 | | | | |

제8조(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3년)〉

| 구간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부 이하 | 76,870 | 61,49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199,850 |
| 3,001부 ~ 1만부 이하 | 83,860 | 67,08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218,020 |
| 1만1부~ 2만부 이하 | 90,840 | 72,67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236,190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2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 이상 발행본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용어의 정의(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 운문류 |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
|-----|---|
| 소설류 |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동화 |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산문류 |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5차 개정 (2021.01.19., 신설) | <p>제6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p> <p>① 저작물을 서책형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 시 : 69,883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 시 : 55,902원 다. 1연 이용 시 : 41,932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편 이용 시 : 181,687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808원(단, 5매 미만은 22,00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5,808원(단, 5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매 미만은 22,000원)</p> <p>4. 동화</p> <p>가. 전편 이용 시 : 181,687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5,808원)</p> <p>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808원(단, 5매 미만은 22,000원)</p> <p>② 발행 부수가 2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2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3년간 발행부수가 2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p> <p>비고1) 서책형 도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전체가 협회 관리저작물이거나, 소설 및 동화(삽화) 등의 산문 문학 저작물의 전편을 전집이나 선집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할 수 있다.</p> <p>가. 도서정가 × 인세율 × 발행부수</p> <p>나. 도서정가 × 인세율 × 판매부수</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7차 개정 (2024.04.03., 전부개정)</p> | <p>제8조(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p> <p>서책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 (단위: 원/3년)〉</p> <table border="1" data-bbox="458 970 1249 1347"> <thead> <tr> <th rowspan="2">구간</th> <th colspan="2">이용량</th> <th colspan="2">운문류</th> <th colspan="2">소설류</th> <th colspan="2">산문류, 동화</th> </tr> <tr> <th>0.5편~1편</th> <th>0.5편 미만</th> <th>200자원고지 1매</th> <th>200자원고지 1매</th> <th>200자원고지 1매</th> <th>200자원고지 1매</th> <th>전편</th> </tr> </thead> <tbody> <tr> <td>3,000부 이하</td> <td>76,870</td> <td>61,490</td> <td>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td> <td>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td> <td>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td> <td>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td> <td>199,850</td> </tr> <tr> <td>3,001부 ~ 1만부 이하</td> <td>83,860</td> <td>67,080</td> <td>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td> <td>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td> <td>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td> <td>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td> <td>218,020</td> </tr> <tr> <td>1만1부~ 2만부 이하</td> <td>90,840</td> <td>72,670</td> <td>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td> <td>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td> <td>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td> <td>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td> <td>236,190</td> </tr> </tbody> </table> <p>*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p> <p>** 2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p> <p>비고) 용어의 정의(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96 1492 1249 1656"> <tbody> <tr> <td>운문류</td> <td>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td> </tr> <tr> <td>소설류</td> <td>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td> </tr> <tr> <td>동화</td> <td>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td> </tr> <tr> <td>산문류</td> <td>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td> </tr> </tbody> </table> | 구간 | 이용량 | | 운문류 | | 소설류 | | 산문류, 동화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3,000부 이하 | 76,870 | 61,49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199,850 | 3,001부 ~ 1만부 이하 | 83,860 | 67,08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218,020 | 1만1부~ 2만부 이하 | 90,840 | 72,67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236,190 | 운문류 |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 소설류 |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동화 |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산문류 |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구간 | 이용량 | | 운문류 | | 소설류 | | 산문류, 동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부 이하 | 76,870 | 61,49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6,3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4,200) | 199,8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1부 ~ 1만부 이하 | 83,860 | 67,08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6,970 (단, 3매 이하 이용은 26,400) | 218,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만1부~ 2만부 이하 | 90,840 | 72,67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7,550 (단, 3매 이하 이용은 28,600) | 236,1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문류 |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설류 |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화 |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문류 |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 구간 | 이용량 | 문서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부 이하 | 27,210 | 22,410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70,760 | |
| 3,001부 ~ 1만부 이하 | 29,800 | 24,550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77,500 |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학습참고서형 도서란 서책형 도서 중,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과 관련 학습서, 참고서, 문제집, 지도서, 연구서, 기타 유사한 부류의 도서를 포함함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5차 개정 (2021.01.19., 신설) | <p>제7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p> <p>① 저작물을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에 복제·배포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 시 : 25,920원 × 조정계수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 시 : 21,348원 × 조정계수 다. 1연 이용 시 : 15,252원 × 조정계수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편 이용 시 : 67,392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2,172원(단, 1매는 3,6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2,172원(단, 1매는 3,600원) × 조정계수 4. 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편 이용 시 : 67,392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2,172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2,172원(단, 1매는 3,600원) × 조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정계수</p> <p>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8,000원 × 조정계수 비교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0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1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정계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917</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p>② 발행 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p> <p>비고1)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함은 교과용도서 기준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판매시기가 정해져 있는 도서를 의미하며, 저작물의 일부와 문제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거나, 사건전개, 인물, 주제, 줄거리, 이해와 감상 등이 같이 수록된 도서를 말한다. 비교2)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하더라도 소설, 수필, 동화 등 저작물의 상당한 양 또는 전부가 이용되어 기존 서책형 도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 연도 | 2020년 | 2021년 | 조정계수 | 0.917 | 1 | | | | | | | | | | | | | | | | | |
| 연도 | 2020년 | 2021년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계수 | 0.917 | 1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전부개정) | <p>제9조(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 (단위: 원/1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용량 구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운문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설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산문류, 동화</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0.5편~1편</th> <th style="text-align: center;">0.5편 미만</th> <th style="text-align: center;">200자원고지 1매</th> <th style="text-align: center;">200자원고지 1매</th> <th style="text-align: center;">전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부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7,2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2,4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7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1부 ~ 1만부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9,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4,5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7,500</td> </tr> </tbody> </table> <p>*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p> <p>비고) 학습참고서형 도서란 서책형 도서 중,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과 관련 학습서, 참고서, 문제집, 지도서, 연구서, 기타 유사한 부류의 도서를 포함함</p> | 이용량 구간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3,000부 이하 | 27,210 | 22,410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70,760 | 3,001부 ~ 1만부 이하 | 29,800 | 24,550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77,500 |
| 이용량 구간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 | | | | | | | | | | |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 | | | | | | | | | | | | | | | | |
| 3,000부 이하 | 27,210 | 22,410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2,280 (단, 1매 이용은 3,780원) | 70,760 | | | | | | | | | | | | | | | | | | | |
| 3,001부 ~ 1만부 이하 | 29,800 | 24,550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2,490 (단, 1매 이용은 4,140원) | 77,500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1컷, 원)〉

| 구간 | 이용량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 | | 3년 | 1년 |
| | 3,000부 이하 | 142,700 | 50,400 |
| | 3,001부~1만부 이하 | 155,670 | 55,200 |
| | 1만1부~2만부 이하 | 168,640 | - |

* 2만부(학습참고서형은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학습참고서형은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이미지 저작물이란 미술, 사진, 만화, 삽화, 도안,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p>제10조(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사용료 (단위: 1컷,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간</th> <th rowspan="2">이용량</th> <th>서책형도서</th> <th>학습참고서형 도서</th> </tr> <tr> <th>3년</th> <th>1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3,000부 이하</td> <td>142,700</td> <td>50,400</td> </tr> <tr> <td></td> <td>3,001부~1만부 이하</td> <td>155,670</td> <td>55,200</td> </tr> <tr> <td></td> <td>1만1부~2만부 이하</td> <td>168,640</td> <td>-</td> </tr> </tbody> </table> <p>* 2만부(학습참고서형은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2만1부(학습참고서형은 1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p> <p>비고) 이미지 저작물이란 미술, 사진, 만화, 삽화, 도안,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p> | 구간 | 이용량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3년 | 1년 | | 3,000부 이하 | 142,700 | 50,400 | | 3,001부~1만부 이하 | 155,670 | 55,200 | | 1만1부~2만부 이하 | 168,640 | - |
| 구간 | 이용량 | |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 | | | | | | | | | | | |
| | | 3년 | 1년 | | | | | | | | | | | | | | | | |
| | 3,000부 이하 | 142,700 | 50,400 | | | | | | | | | | | | | | | | |
| | 3,001부~1만부 이하 | 155,670 | 55,200 | | | | | | | | | | | | | | | | |
| | 1만1부~2만부 이하 | 168,640 | - | | | | | | | | | | | | | | | | |

제4장 전송사용료

제11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저작물의 판매량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 ×30%이내 |
| 회원제 서비스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매출액×30%이내×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

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제2차 개정 (2009.11.09., 신설) | <p>제9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th> <th>전송사용료율</th> </tr> </thead> <tbody> <tr> <td>저작물의 판매량</td> <td>· 데이터 제작 : 사업자</td> <td>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 ×30%이내</td> </tr> <tr> <td>회원제 서비스</td> <td>· 데이터 제작 : 사업자</td> <td>사용료 = 매출액 × 30% 이내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td> </tr> </tbody> </table>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저작물의 판매량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 ×30%이내 | 회원제 서비스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매출액 × 30% 이내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 | | | | |
| 저작물의 판매량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 ×30%이내 | | | | | | | | |
| 회원제 서비스 |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매출액 × 30% 이내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 | | | | | | | |
| 제5차 개정 (2021.01.19., 일부개정) | <p>제8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th> <th>전송사용료율</th> </tr> </thead> <tbody> <tr> <td>저작물의 판매량</td> <td>·데이터 제작 : 사업자</td> <td>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30% 이내</td> </tr> <tr> <td>회원제서비스</td> <td>·데이터 제작 : 사업자</td> <td>사용료 = 매출액 × 30%이내 × 어문저작물 관리비율</td> </tr> </tbody> </table> <p>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p> <p>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p> <p>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30% 이내 | 회원제서비스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매출액 × 30%이내 × 어문저작물 관리비율 |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 | | | | |
|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30% 이내 | | | | | | | | |
| 회원제서비스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매출액 × 30%이내 × 어문저작물 관리비율 | | |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 | <p>제11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th> <th>전송사용료율</th> </tr> </thead> <tbody> <tr> <td>저작물의 판매량</td> <td>·데이터 제작 : 사업자</td> <td>사용료 = 판매가 × 판매수량 × 30% 이내</td> </tr> </tbody> </table>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판매가 × 판매수량 × 30% 이내 | | | |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 | | | | |
|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사용료 = 판매가 × 판매수량 × 30% 이내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8 343 635 379">분류</th> <th data-bbox="644 343 875 379">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th> <th data-bbox="883 343 1250 379">전송사용료율</th> </tr> </thead> </table>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 분류 |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 전송사용료율 | | | | |
| | 회원제 서비스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 $\text{사용료} = \text{매출액} \times 30\% \text{이내} \times \text{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 | | |
| | <p>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p> <p>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p> <p>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 | | | | |

제12조(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 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3년)〉

| 이용자 | 이용량 | | 운문류 | | | 소설류 | | 산문류, 동화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 200자원고지 1매 | | 전편 | | |
| 3,000명 이하 | 63,800 | 51,030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 165,880 | | |
| 3,001명 ~ 1만명 이하 | 69,600 | 55,670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 180,960 | | |
| 1만1명~ 2만명 이하 | 75,400 | 60,310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 196,040 | |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2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2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비고)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를 말한다. 단,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같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12조(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료 (단위: 원/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이용자</th> <th colspan="2">이용량</th> <th colspan="2">운문류</th> <th colspan="2">소설류</th> <th colspan="2">산문류, 동화</th> </tr> <tr> <th>0.5편~1편</th> <th>0.5편 미만</th> <th colspan="2">200자원고지 1매</th> <th colspan="2">200자원고지 1매</th> <th colspan="2">전편</th> </tr> </thead> <tbody> <tr> <td>3,000명 이하</td> <td>63,800</td> <td>51,030</td> <td colspan="2">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td> <td colspan="2">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td> <td colspan="2">165,880</td> </tr> <tr> <td>3,001명 ~ 1만명 이하</td> <td>69,600</td> <td>55,670</td> <td colspan="2">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td> <td colspan="2">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td> <td colspan="2">180,960</td> </tr> <tr> <td>1만1명~ 2만명 이하</td> <td>75,400</td> <td>60,310</td> <td colspan="2">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td> <td colspan="2">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td> <td colspan="2">196,040</td> </tr> </tbody> </table> | 이용자 | 이용량 | | 운문류 | | 소설류 | | 산문류, 동화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 200자원고지 1매 | | 전편 | | 3,000명 이하 | 63,800 | 51,030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 165,880 | | 3,001명 ~ 1만명 이하 | 69,600 | 55,670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 180,960 | | 1만1명~ 2만명 이하 | 75,400 | 60,310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 196,040 | |
| | 이용자 | | 이용량 | | 운문류 | | 소설류 | | 산문류, 동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 200자원고지 1매 | | 전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명 이하 | 63,800 | 51,030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 5,300 (단, 3매 이하 이용은 20,000) | | 165,8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1명 ~ 1만명 이하 | 69,600 | 55,670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 5,780 (단, 3매 이하 이용은 21,900) | | 180,9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만1명~ 2만명 이하 | 75,400 | 60,310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 6,260 (단, 3매 이하 이용은 23,700) | | 196,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p> <p>** 2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2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p> <p>비고)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를 말한다. 단,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같다.)</p> |

제13조(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어문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원/1년)〉

| 이용자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3,000명 이하 | 22,680 | 18,68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58,960 |
| 3,001명 ~ 1만명 이하 | 24,840 | 20,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64,580 |

*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5차 개정 (2021.01.19., 신설) | <p>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p> <p>①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 수 10,000명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 시 : 21,60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 시 : 17,790원 다. 1연 이용 시 : 12,71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편 이용 시 : 56,16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4. 동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편 이용 시 : 56,16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81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0,000원 <p>② 저작물 이용자가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명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가 10,000명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단, 저작물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수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전부개정) | <p>제13조(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어문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 (단위: 원/1년)〉</p> <table border="1" data-bbox="451 568 1248 854"> <thead> <tr> <th data-bbox="451 568 576 604">이용량</th> <th colspan="2" data-bbox="576 568 805 604">운문류</th> <th data-bbox="805 568 982 604">소설류</th> <th colspan="2" data-bbox="982 568 1248 604">산문류, 동화</th> </tr> <tr> <th data-bbox="451 604 576 640">이용자</th> <th data-bbox="576 604 688 640">0.5편~1편</th> <th data-bbox="688 604 805 640">0.5편 미만</th> <th data-bbox="805 604 982 640">200자원고지 1매</th> <th data-bbox="982 604 1153 640">200자원고지 1매</th> <th data-bbox="1153 604 1248 640">전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1 640 576 751">3,000명 이하</td> <td data-bbox="576 640 688 751">22,680</td> <td data-bbox="688 640 805 751">18,680</td> <td data-bbox="805 640 982 751">1,900 (단, 1매 이용시 3,150)</td> <td data-bbox="982 640 1153 751">1,900 (단, 1매 이용시 3,150)</td> <td data-bbox="1153 640 1248 751">58,960</td> </tr> <tr> <td data-bbox="451 751 576 854">3,001명 ~ 1만명 이하</td> <td data-bbox="576 751 688 854">24,840</td> <td data-bbox="688 751 805 854">20,450</td> <td data-bbox="805 751 982 854">2,080 (단, 1매 이용시 3,450)</td> <td data-bbox="982 751 1153 854">2,080 (단, 1매 이용시 3,450)</td> <td data-bbox="1153 751 1248 854">64,580</td> </tr> </tbody> </table> <p>* 동화의 경우, 전편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단가로 계산한다. ** 1만명을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만1명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p> | 이용량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이용자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3,000명 이하 | 22,680 | 18,68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58,960 | 3,001명 ~ 1만명 이하 | 24,840 | 20,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64,580 |
| 이용량 | 운문류 | | 소설류 | 산문류, 동화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 | 0.5편~1편 | 0.5편 미만 | 200자원고지 1매 | 200자원고지 1매 | 전편 | | | | | | | | | | | | | | | | | | | | |
| 3,000명 이하 | 22,680 | 18,68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1,900 (단, 1매 이용시 3,150) | 58,960 | | | | | | | | | | | | | | | | | | | | |
| 3,001명 ~ 1만명 이하 | 24,840 | 20,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2,080 (단, 1매 이용시 3,450) | 64,580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이미지 저작물 등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료 (단위: 1컷, 원)〉

| 이용자 | 이용량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 | | 3년 | 1년 |
| | 3,000명 이하 | 118,440 | 42,000 |
| | 3,001명~1만명 이하 | 129,200 | 46,000 |
| | 1만1명~2만명 이하 | 139,970 | - |

* 2만명(학습참고서형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만1명(학습참고서형은 1만1명) 이상 이용자는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p>제14조(이미지 저작물 등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사용료 (단위: 원/1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이용자</th> <th>이용량</th> <th>서책형도서</th> <th>학습참고서형 도서</th> </tr> <tr> <th></th> <th>3년</th> <th>1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3,000명 이하</td> <td>118,440</td> <td>42,000</td> </tr> <tr> <td></td> <td>3,001명~1만명 이하</td> <td>129,200</td> <td>46,000</td> </tr> <tr> <td></td> <td>1만1명~2만명 이하</td> <td>139,970</td> <td>-</td> </tr> </tbody> </table> <p>* 2만명(학습참고서형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만1명(학습참고서형은 1만1명) 이상 이용자는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p> | 이용자 | 이용량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3년 | 1년 | | 3,000명 이하 | 118,440 | 42,000 | | 3,001명~1만명 이하 | 129,200 | 46,000 | | 1만1명~2만명 이하 | 139,970 | - |
| 이용자 | 이용량 | | 서책형도서 | 학습참고서형 도서 | | | | | | | | | | | | | | | | |
| | | 3년 | 1년 | | | | | | | | | | | | | | | | | |
| | 3,000명 이하 | 118,440 | 42,000 | | | | | | | | | | | | | | | | | |
| | 3,001명~1만명 이하 | 129,200 | 46,000 | | | | | | | | | | | | | | | | | |
| | 1만1명~2만명 이하 | 139,970 | - | | | | | | | | | | | | | | | | | |

제5장 방송, 영상, 공연 등 사용료

제15조(방송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15조(방송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방송용 등 영상물의 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상물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16조(방송용 등 영상물의 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상물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7조(영화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화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17조(영화제작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영화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8조(공연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공연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18조(공연 사용) 협회 관리저작물의 공연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장 광고, 홍보 등 사용료

제19조(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 ① 협회 관리저작물의 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1용도, 1년 사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본 사용료(단위: 원)〉

| 구분 | 운문 | |
|------|---------|---------|
| 사용단위 | 0.5~1편 | 0.5편 미만 |
| 금액 | 150,000 | 100,000 |

〈유형별 사용용도 계수(단위: %)〉

| 용도 | 상세용도 | 계수 | 사용용도 계수 |
|---------------|---|-----|---------|
| 온라인 세트 | 홈페이지, 웹/모바일/앱 배너광고, 이메일, E-카다로그, 전자브로슈어,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앱 페이지 및 아이콘탑재용 개인 휴대 전자제품(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 1용도 | 100 |
| | | SET | 250 |
| 홍보판촉 세트(인쇄) | 브로슈어, DM, 카다로그, 팸플릿, 전단지, 봉투, 사외용 기업, 리포트/보고서(연차보고서 등) | 1용도 | 130 |
| | | SET | 250 |
| 사내용세트·실내 전시 | 사내배포용 브로슈어, 뉴스레터, 교육자료, 포트/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웹진 및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사내 디스플레이, 포스터, 벽면장식(비광고성, 실내용), 박물관 디스플레이 (비광고성, 비영리/교육목적의 전시회에 한함), 액자용 인화(사내 및 개인소장용) | 1용도 | 100 |
| | | SET | 250 |
| 캘린더 | 홍보판촉용 캘린더 (탁상용, 벽걸이) | 1용도 | 150 |
| | 판매용 캘린더 | 1용도 | 250 |
| TV 광고(CF) | 중앙방송(KBS, MBC, SBS, EBS), 지방방송, 케이블방송, IPTV, 인터넷방송 | 1용도 | 300 |
| 광고용세트 (인쇄/옥외) | 신문광고, 잡지광고, 신문/잡지 속 전단광고, 옥외광고, 차량광고, 디스플레이(포스터, POP, 디스플레이), 지하철역사내광고, 자판기/현금인출기/노래방기기/티켓발권기 등의 전자화면, 극장 스크린광고, 전화번호부/디렉토리 광고 | 1용도 | 200 |
| | | SET | 600 |
| 옥외 전시 | 옥외에 디스플레이, 판넬, 벽면 등에 불특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 1용도 | 200 |

② 다만, 동일 저작물을 2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가 낮은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50% 추가적인 할인계수를 적용한다. 2개 용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할인 계수를 적용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제7차 개정 (2024.04.03., 신설) | 제19조(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 ① 협회 관리저작물의 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1용도, 1년 사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 |
| | <기본 사용료(단위: 원)> | | | |
| | 구분 | 운문 | | |
| | 사용단위 | 0.5~1편 | 0.5편 미만 | |
| | 금액 | 150,000 | 100,000 | |
| | <유형별 사용용도 계수(단위: %)> | | | |
| | 용도 | 상세용도 | 계수 | 사용용도 계수 |
| | 온라인 세트 | 홈페이지, 웹/모바일/앱 배너광고, 이메일, E-카다로그, 전자브로슈어,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앱 페이지 및 아이콘탑재용 개인 휴대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 1용도 | 100 |
| | | | SET | 250 |
| | 홍보판촉 세트(인쇄) | 브로슈어, DM, 카다로그, 팸플릿, 전단지, 봉투, 사외용 기업, 리포트/보고서(연차보고서 등) | 1용도 | 130 |
| SET | | | 250 | |
| 사내용세트·실내 전시 | 사내배포용 브로슈어, 뉴스레터, 교육자료, 포트/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웹진 및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사내 디스플레이, 포스터, 벽면장식(비광고성, 실내용), 박물관 디스플레이 (비광고성, 비영리/교육목적의 전시회에 한함), 액자용 인화(사내 및 개인소장용) | 1용도 | 100 | |
| | | SET | 250 | |
| 캘린더 | 홍보판촉용 캘린더 (탁상용, 벽걸이) 판매용 캘린더 | 1용도 | 150 | |
| | | 1용도 | 250 | |
| TV 광고(CF) | 중앙방송(KBS, MBC, SBS, EBS), 지방방송, 케이블방송, IPTV, 인터넷방송 | 1용도 | 300 | |
| 광고용세트 (인쇄/옥외) | 신문광고, 잡지광고, 신문/잡지 속 전단광고, 옥외광고, 차량광고, 디스플레이(포스터, POP, 디스플레이), 지하철역사내광고, 자판기/현금인출기/노래방기기/티켓발권기 등의 전자화면, 극장 스크린 광고, 전화번호부/디렉토리 광고 | 1용도 | 200 | |
| | | SET | 600 | |
| 옥외 전시 | 옥외에 디스플레이, 패널, 벽면 등에 불특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 1용도 | 200 | |
| ② 다만, 동일 저작물을 2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가 낮은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50% 추가적인 할인계수를 적용한다. 2개 용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할인 계수를 적용한다. | | | | |

제7장 보 칙

- 제20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용자가 사용 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3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제6조(기타 사용료) 전조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 제1차 개정 (2007.10.11., 일부개정) | 제6조(기타 사용료) 전조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u>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u> |
| 제2차 개정 (2009.11.09., 전부개정) | 제10조(기타 사용료)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u>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u> ② 사진·미술·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
| 제5차 개정 (2021.01.19., 전부개정) | 제10조(기타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이용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1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
| 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 | 제20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u>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용자가 사용 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u>3개월</u>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p> |

제20조의 2(상호협의를 관련 보칙)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5차 개정 (2021.01.19., 신설) | 제10조의 2(상호협의를 관련 보칙)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
| 제7차 개정 (2024.04.03., 일부개정) | 제20조의 2(상호협의를 관련 보칙)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규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0.11.14., 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1차 개정 (2007.10.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개정 (2009.11.09.)</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9.11.0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개정 (2012.11.30.)</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9.11.0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11.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개정 (2017.02.08.)</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9.11.0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11.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7.02.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5차 개정 (2021.01.19.)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9.11.0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11.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7.02.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01.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6차 개정 (2021.05.24.)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9.11.0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11.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7.02.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01.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05.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7차 개정 (2024.04.03.)</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7.10.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9.11.0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2.11.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7.02.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01.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1.05.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4.04.03)</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규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3년간 유효하다.</p> |

07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2021.09.12. 제정)
2. 연혁집(제정)

2001년 09월 12일 제정

제1장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1조(계약체결)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신탁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료 지불) 협회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저작물 사용료는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내역 송부)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내역서를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5조(사용료 구분 및 금액)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극장용 영화의 최초 영상화 각본료는 저작재산권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2. 텔레비전 방영 : 완성된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3. 유선 방송에서의 방영 : 완성된 영화를 유선방송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4. 재상영 : 계약기간 종료 후 재상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

5. 국외수출 : 완성된 영화를 외국으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가격의 4%
6. 정규극장 외 상영 : 완성된 영화를 국내 정규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할 때에는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4%
7. 비디오 테이프화 : 완성된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화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8. 기타 기기 : 완성된 영화가 향후 개발될 새로운 기기에 이용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영화제작자들이 직접 상영, 복제·배포 등을 한 경우 수익금의 4%

제6조(기타 사용료) 제5조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제7조(사용료 지급의 특례) 제5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 이외의 자인 영화제작자 등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협회와 약정한 경우에는 영화제작자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화제작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1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① 각종 예술제, 학술연구, 교육 등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당해 영화의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비(홍보비 및 프린트비 포함)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자는 협회에 수입이 제작비를 초과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1조(계약체결)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신탁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1조(계약체결)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신탁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조(사용료 지불) 협회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저작물 사용료는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2조(사용료 지불) 협회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저작물 사용료는 제2장의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

제3조(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3조(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내역 송부)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내역서를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4조(사용내역 송부) 사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내역서를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5조(사용료 구분 및 금액)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극장용 영화의 최초 영상화 각본료는 저작재산권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2. 텔레비전 방영 : 완성된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3. 유선 방송에서의 방영 : 완성된 영화를 유선방송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4. 재상영 : 계약기간 종료 후 재상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
5. 국외수출 : 완성된 영화를 외국으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가격의 4%
6. 정규극장 외 상영 : 완성된 영화를 국내 정규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할 때에는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7. 비디오 테이프화 : 완성된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화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8. 기타 기기 : 완성된 영화가 향후 개발될 새로운 기기에 이용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영화제작자들이 직접 상영, 복제· 배포 등을 한 경우 수익금의 4%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p>제5조(사용료 구분 및 금액)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극장용 영화의 최초 영상화 각본료는 저작재산권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2. 텔레비전 방영 : 완성된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3. 유선 방송에서의 방영 : 완성된 영화를 유선방송에서 방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의 4% 4. 재상영 : 계약기간 종료 후 재상영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영화제작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 5. 국외수출 : 완성된 영화를 외국으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가격의 4% 6. 정규극장 외 상영 : 완성된 영화를 국내 정규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할 때에는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7. 비디오 테이프화 : 완성된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화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4%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8. 기타 기기 : 완성된 영화가 향후 개발될 새로운 기기에 이용될 경우 사용자가 영화제작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4%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영화제작자들이 직접 상영, 복제·배포 등을 한 경우 수익금의 4% |

제6조(기타 사용료) 제5조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6조(기타 사용료) 제5조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지급의 특례) 제5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 이외의 자인 영화제작자 등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협회와 약정한 경우에는 영화제작자가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화제작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1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7조(사용료 지급의 특례) 제5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저작물 사용자 이외의 자인 영화제작자 등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협회와 약정한 경우에는 영화제작자가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화제작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1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면제)

- ① 각종 예술제, 학술연구, 교육 등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제5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당해 영화의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비(홍보비 및 프린트비 포함)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자는 협회에 수입이 제작비를 초과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제8조(사용료 면제) ① 각종 예술제, 학술연구, 교육 등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당해 영화의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비(홍보비 및 프린트비 포함)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화제작자는 협회에 수입이 제작비를 초과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1.09.12., 제정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08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2021.01.05. 개정)
2. 연혁집(제정~제1차 개정)

2001년 08월 10일 제정 2021년 01월 0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권접권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사용료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아래 표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구 분 | 사용요율 |
|----------|---------------|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20% |
| (주)S B S | 기본출연료의 14.75% |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13% |

| 구 분 | 사용요율 |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 기본출연료의 10%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교육방송공사의 4방 이상은 25%로 한다.

제5조(네트 방송 사용료) ① ‘네트 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본방송 및 재방송 포함)하는 것이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 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② 본방송을 전국 네트 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출연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 사용요율 |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5%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3% |

③ 재방송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본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하며, 재방송 이후의 네트사용료는 재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네트방송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네트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제6조(방송 사용료의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내부에서 업무상 재방송하는 경우 (자체 시험방송 포함)
2. 정전, 중계 기기의 고장 등 사고 및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특수방송에서 방송하는 경우
4. 방송사가 시청자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배포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실연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방송사업자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 | |
|---------|-----------|
|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 만화영화 | 공급금액의 7% |
| 기타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5% |

2. 제3의 사업자에게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 |
|-----------|
| 공급금액의 10% |
|-----------|

3. 일반공중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 |
|----------|
| 공급금액의 7% |
|----------|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21.01.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2.02.21.,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u>사용하고자</u>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문서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2.02.21., 제정 | 제2조(계약문서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2.02.21., 제정 | 제3조(계약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

제2장 사용료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아래 표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구 분 | 사용요율 |
|------------|---------------|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20% |
| (주)S B S | 기본출연료의 14.75% |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13%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 기본출연료의 10%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교육방송공사의 4방 이상은 25%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2002.02.21., 제정 | 제4조(재방송료) | | | | | | | | | | | | | | | | |
| |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한국방송공사</td> <td>기본출연료의 20%</td> </tr> <tr> <td>(주)문화방송</td> <td>기본출연료의 20%</td> </tr> <tr> <td>(주)S B S</td> <td>기본출연료의 14.75%</td> </tr> <tr> <td>한국교육방송공사</td> <td>기본출연료의 20%</td> </tr> <tr> <td>(주)경인방송</td> <td>기본출연료의 13%</td> </tr> <tr> <td>지방문화방송</td> <td>기본출연료의 7%</td> </tr> <tr> <td>지역민방</td> <td>기본출연료의 7%</td> </tr> </tbody> </table> | 구 분 | 사용요율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20% | (주)S B S | 기본출연료의 14.75%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13%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 | | | | | | | | | | | | |
|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20% | | | | | | | | | | | | | | | |
| | (주)S B S | 기본출연료의 14.75% | | | | | | | | | | | | | | | |
|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 | | | | | | | | | | | | |
|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13% | | | | | | | | | | | | | | |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 | | | | | | | | | | | | | |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교육방송공사의 4방 이상은 25%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제1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p>제4조(재방송료)</p> <p>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아래 표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방송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문화방송</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S B S</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14.7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육방송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경인방송</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1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문화방송</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민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편성채널 방송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출연료의 10%</td> </tr> </tbody> </table> <p>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교육방송공사의 4방 이상은 25%로 한다.</p> | 구 분 | 사용요율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20% | (주)S B S | 기본출연료의 14.75%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13%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 기본출연료의 10% |
| 구 분 | 사용요율 | | | | | | | |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 | | | | | | | | | | | | | | | |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20% | | | | | | | | | | | | | | | | | | |
| (주)S B S | 기본출연료의 14.75% | | | | | | | | | | | | | | | | | | |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20% | | | | | | | | | | | | | | | | | | |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13% | | | | | | | | | | | | | | | | | |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 | | | | | | | | | | | | | | | |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 | | | | | | | | | | | | | | | | |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 기본출연료의 10% | | | | | | | | | | | | | | | | | | |

제5조(네트방송사용료)

- 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본방송 및 재방송 포함)하는 것이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 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 ② 본방송을 전국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출연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사용요율 |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5%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3% |

- ③ 재방송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본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하며, 재방송 이후의 네트사용료는 재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네트방송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네트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2002.02.21., 제정 | <p>제5조(네트방송사용료)</p> <p>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본방송 및 재방송 포함)하는 것이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 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p> <p>② 본방송을 전국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출연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용요율</th> </tr> </thead> <tbody> <tr> <td>지방문화방송</td> <td>기본출연료의 5%</td> </tr> <tr> <td>지역민방</td> <td>기본출연료의 3%</td> </tr> </tbody> </table> <p>③ 재방송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본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하며, 재방송 이후의 네트사용료는 재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한다.</p> <p>④ 이 규정에서 정한 네트방송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네트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한다.</p> | 구분 | 사용요율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5%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3% |
| 구분 | 사용요율 | | | | | |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5% | | | | | | |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3% | | | | | | |

제6조(방송 사용료의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내부에서 업무상 재방송하는 경우 (자체 시험방송 포함)
2. 정전, 중계 기기의 고장 등 사고 및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특수방송에서 방송하는 경우
4. 방송사가 시청자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2.02.21., 제정 | <p>제6조(방송 사용료의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사가 내부에서 업무상 재방송하는 경우 (자체 시험방송 포함) 2. 정전, 중계 기기의 고장 등 사고 및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특수방송에서 방송하는 경우 4. 방송사가 시청자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배포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실연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방송사업자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 | |
|---------|-----------|
|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 만화영화 | 공급금액의 7% |
| 기타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5% |

2. 제3의 사업자에게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 |
|-----------|
| 공급금액의 10% |
|-----------|

3. 일반공중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 |
|----------|
| 공급금액의 7%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2002.02.21., 제정 | <p>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배포하는 경우 전체 방송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사용료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p> <p>1. 국외의 방송사 또는 국내·외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p> <table border="1"> <tbody> <tr> <td>드라마</td> <td>공급금액의 10%</td> </tr> <tr> <td>만화영화</td> <td>공급금액의 7%</td> </tr> <tr> <td>기타 프로그램</td> <td>공급금액의 5%</td> </tr> </tbody> </table> <p>2.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p> <table border="1"> <tbody> <tr> <td>공급금액의 10%</td> </tr> </tbody> </table> <p>3.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p> <table border="1"> <tbody> <tr> <td>공급금액의 7%</td> </tr> </tbody> </table> |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만화영화 | 공급금액의 7% | 기타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5%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7% |
|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 | | | | | | |
| 만화영화 | 공급금액의 7% | | | | | | | | |
| 기타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5% | | | | | | | | |
| 공급금액의 10% | | | | | | | | | |
| 공급금액의 7% | | | | | | | | | |
| 제1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p>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배포하는 경우 <u>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실</u></p>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p><u>연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u></p> <p>1. 방송사업자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드라마</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급금액의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만화영화</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급금액의 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프로그램</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급금액의 5%</td> </tr> </table> <p>2. 제3의 사업자에게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급금액의 10%</td> </tr> </table> <p>3. 일반공중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급금액의 7%</td> </tr> </table> |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만화영화 | 공급금액의 7% | 기타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5% | 공급금액의 10% | 공급금액의 7% |
|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 | | | | | | |
| 만화영화 | 공급금액의 7% | | | | | | | | |
| 기타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5% | | | | | | | | |
| 공급금액의 10% | | | | | | | | | |
| 공급금액의 7% | | | | | | | | | |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2.02.21., 제정 |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 제1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u>이용을 허락</u>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2021. 1. 5)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2.02.21., 제정 |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1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부 칙(2021. 1. 5)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0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 사용료 징수규정(2018.07.25. 개정)
2. 연혁집(제정~제1차 개정)

2005년 11월 09일 제정 2018년 07월 2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영상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관리저작물 이용계약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이용구분) 협회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제5조(사용료) 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0.55
2. 1,000원 × 0.55 ×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0.55
2. 2,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비고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자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 사용료를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제2조(계약의 체결) 제협이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협과 문서로 신탁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제2조(계약의 체결) <u>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관리저작물 이용계약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관리저작물 이용계약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이용구분) 협회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p>제3조(사용구분) 제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 2.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3. 기타 공연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 서비스 |
| 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p>제4조(이용구분) 협회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

제5조(사용료)

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0.55
2. 1,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자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0.55
2. 2,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비고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자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p>제4조(사용료)</p> <p>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 0.55 2. 1,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p>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이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자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 0.55 2. 2,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비교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이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자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p>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
| <p>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p> | <p><u>제5조(사용료)</u></p> <p>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 0.55 2. 1,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비교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p>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 0.55 2. 2,000원 × 0.55 × 관리자작물 이용횟수 비교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자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p>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

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7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7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제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u>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제6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제9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5.11.09., 제정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1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규정은 <u>문화체육관광부 장관</u>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10

한국언론진흥재단

1. 사용료 징수규정(2018.07.25. 개정)
2. 연혁집(제정~제2차 개정)

2006년 06월 07일 제정 2018년 07월 25일 개정
2010년 11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 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재단이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과 문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재단이 정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방송뉴스 등을 위해 고유하게 작성된 음향·음악)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3. 교육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본 규정 제6조 제6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4.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법원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3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5. 대학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4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지면형태의 뉴스 및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뉴스 등 뉴스저작물을 전자장치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재단 및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뉴스저작물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소비자'라고 한다.)가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어가 포함된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특정 기간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의 복제 및 배포: 뉴스를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5.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를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용방법

제6조(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의 사용료)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부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4)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 수의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5)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04,6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고4)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 비고5)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6,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 비고6)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47,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3.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 비고2) 계정을 5개 단위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 구분 |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
|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

5. 개인이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6. 교육기관에서 뉴스활용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 복제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 판매금액의 65% 또는 1,30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교육기관 내 교원 및 학생의 수로 한정한다.
- 비고2)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매체의 수는 계약시 지정한 45개 매체로 한정한다.

7.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구분 |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일반매체 |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 패키지 구성 |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제7조(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2% 또는 1,077,12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2% 또는 934,56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2% 또는 807,74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2% 또는 562,32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2% 또는 483,12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2% 또는 403,92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4)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제8조(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51개 이상 |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41~5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31~4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21~3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5그룹 | 11~2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1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2)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2.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51개 이상 | 9,900,000원 |
| 2그룹 | 41~50개 | 8,800,000원 |
| 3그룹 | 31~40개 | 7,700,000원 |
| 4그룹 | 21~30개 | 6,600,000원 |
| 5그룹 | 11~20개 | 5,500,000원 |
| 6그룹 | 1~10개 | 4,400,000원 |

3. 수집된 뉴스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 회원수(인원) | | 사용료(연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공공도서관의 회원수는 공공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른다.

비고2) 공공도서관은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4. 수집된 뉴스를 대학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 회원수(인원) | | 사용료(연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25,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30,80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0명 이상 ~ 2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5,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10,000명 이상 ~ 1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대학도서관의 회원수는 대학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르되 그 중 교직원 및 재학생 수만 합산한다.

비고2) 대학도서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제9조 (뉴스의 복제 및 배포) 1. 이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을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분류 | 수량 | 사용료(기사 1건당) | | | | 사용예시 |
|--------|----|---------------------------------|----------------|----------------|------------|--|
| | | 5천부 미만 | 5천부~ 1만부 미만 | 1만부~ 5만부 미만 | 5만부 이상 | |
| 출판 | | 150,000원 | 35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
| 광고 | | 300,000원 | 7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카달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 |
| 온라인 이용 | |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 | | |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게재 |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2.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보도사진을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별 보도사진 1건당 판매금액의 62%

제10조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업무를 제공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20% 또는 22,000원 중 많은 금액
2.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면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27,500원 중 많은 금액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41,250원 중 많은 금액

제11조 (해외 서비스) ①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판매촉진 등) ①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제공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무료 제공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재단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사용료)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15조(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①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가산금)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의 이용내역(계약서, 계정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 외의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계정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계정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2.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매체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매체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 범위를 초과하는 기간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범위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4. 소비자에게 계정의 중복접속을 허용한 경우, 중복접속을 허가한 계정이 포함된 계약의 총 계약금액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5.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미제출·누락 계약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계약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6.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발생한 해당 매출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제1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약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뉴스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u> |

제2조(계약의 체결) 재단이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과 문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2조(계약의 체결) 재단이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과 문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 (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재단이 정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3조 (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재단이 정한 뉴스저작권 이용 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방송뉴스 등을 위해 고유하게 작성된 음향·음악)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3. 교육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본 규정 제6조 제6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4.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법원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3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5. 대학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4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음악저작물(방송뉴스 등을 위해 고유하게 작성된 음향·음악)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p> <p>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p> <p>3. 교육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본 규정 제6조 제6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p> <p>4.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법원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3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p> <p>5. 대학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본 규정 제8조 제4호의 뉴스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한다.</p>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제2조(사용료의 징수) 재단이 관리하는 뉴스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본 규정에 규정된 이용금액이나 이용요율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 〈삭 제〉 |

제5조(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지면형태의 뉴스 및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뉴스 등 뉴스저작물을 전자장치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재단 및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뉴스저작물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소비자’라고 한다.)가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어가 포함된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특정 기간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의 복제 및 배포: 뉴스를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5.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를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용방법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p>제3조(이용형태의 구분) 재단은 뉴스저작권 중 전송권을 다음과 같은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열람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뉴스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인터넷다운로드 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저작물을 원문서비스(PDF서비스) :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뉴스저작물의 원문형태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5. 기타 이용방법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p>제2조(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고, 제2호 내지 제5호의 이용형태에는 제1호의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가 포함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PDF서비스) :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뉴스저작물의 원문형태를 그대로 PDF파일 형식으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인터넷 열람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인터넷 다운로드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5. 기타 이용방법 |
|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p> | <p>제5조(이용형태의 구분) 사용자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의 이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지면형태의 뉴스 및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뉴스 등 뉴스저작물을 전자장치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재단 및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뉴스저작물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소비자'라고 한다.)가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어가 포함된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특정 기간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뉴스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의 복제 및 배포: 뉴스를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5.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를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용방법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p>제6조(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p> <p>① 뉴스저작물을 PDF파일 형태의 원문으로 서비스하고자 할 경우, 영업형태에 따라 다음의 1호 또는 2호를 선택하여 재단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DF의 면수로 판매하는 경우, PDF의 총이용면수 × PDF면당가격 × 관리계수 2. PDF를 면수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PDF관련 영업 총매출액 × 50% × 관리계수 <p>② 매체별 월 기본사용료의 등급과 가격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며, 재단은 시기별로 매체별 월 기본사용료의 등급과 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p> |
| 제1차 개정 (2010.11.01., 전부개정) | <p>제3조(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의 사용료)</p> <p>① <u>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체별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월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가격의 59% 또는 9,735원 중 많은 금액 2. 매체별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열람하게 하는 경우, 매체별 일 또는 월 판매가격의 77% 3.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면 또는 개별 기사로 판매하는 경우, 면 또는 개별 기사의 건수에 판매가격을 곱한 액수의 57% <p>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 이용의 경우 및 사용자 하여금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단과 이용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후자의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각호의 판매가격은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재단은 매월 이용자에게 위 판매가격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
| 제2차 개정 (2018.07.25.) | 〈삭 제〉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p>제4조(인터넷 열람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의 사용료)</p> <p>① 뉴스저작물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뉴스저작물을 열람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이용수수료를 받는 전송서비스의 경우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p>1. 월 사용료(700원) × 사용자의 수 × 관리계수 또는 뉴스저작물의 총이용횟수 × 이용회수당 가격(30원) × 관리계수</p> <p>2. 뉴스저작물 이용에 관련된 총 매출액 × 70% × 관리계수</p> <p>②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회사나 도서관 등에서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가공하여 인트라넷으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서비스(원문서비스 제외)</p> <p>뉴스저작물의 개수 × 뉴스저작물 1개당 사용료(300원) × 관리계수</p> <p>③ 뉴스저작물 사용자가 자기가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서버에 뉴스저작물을 저장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서비스</p> <p>1. 뉴스저작물의 개수 × 뉴스저작물의 1개당 월 사용료(7,000원) × 관리계수</p> <p>2.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뉴스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서비스의 경우 뉴스저작물 1개당 월 사용료를 7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성 여부와 개인운영의 의미와 범위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비고1) "관리계수"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뉴스저작물 가운데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
| 제1차 개정 (2010.11.01., 전부개정) | <p>제4조(인터넷 열람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의 사용료)</p> <p>① <u>뉴스저작물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뉴스저작물을 열람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이용수수료를 받는 전송서비스의 경우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u></p> <p>1. <u>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월 단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용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 월 판매가격의 73%</u></p> <p>2. <u>사용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뉴스저작물을 저장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뉴스저작물의 개수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75%</u></p> <p>3. <u>기타 열람 및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 월 판매가격의 72%</u></p> <p>뉴스저작물의 개수 × 뉴스저작물 1개당 사용료(300원) × 관리계수</p> <p>② 제1항 각호의 판매가격은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재단은 매월 이용</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자에게 위 판매가격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 〈삭 제〉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제5조(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의 사용료)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의 사용료는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되, 무선인터넷에 이용된 뉴스저작물의 전체규모, 무선인터넷의 이용자 규모, 저작물의 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제5조(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의 사용료)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의 사용료는 제4조 제1호를 준용하되, 무선인터넷에 이용된 뉴스저작물의 전체규모, 무선인터넷의 이용자 규모, 저작물의 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 〈삭 제〉 |

제6조(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의 사용료)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부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4)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5)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04,6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

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고4)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 비고5)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6,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 비고6)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47,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3.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 비고2) 계정을 5개 단위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 구분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
|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

5. 개인이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6. 교육기관에서 뉴스활용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 복제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 판매금액의 65% 또는 1,30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교육기관 내 교원 및 학생의 수로 한정한다.
- 비고2)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매체의 수는 계약시 지정한 45개 매체로 한정한다.

7.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구분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일반매체 |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 패키지 구성 |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6조(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의 사용료)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부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내부직원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명~2,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명~1,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명~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명~4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p>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4)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5)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04,6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p> <p>2.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내부직원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명~2,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명~1,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명~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명~4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p>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p>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p>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비고4) 제4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p> <p>비고5)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6,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p> <p>비고6)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47,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p> <p>3.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p> <p>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p> <p>비고2) 계정을 5개 단위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p> <p>4.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게시판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p>5. 개인이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p> <p>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p> <p>6. 교육기관에서 뉴스활용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 복제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 판매금액의 65% 또는 1,300,000원 중 많은 금액</p> <p>비고1)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교육기관 내 교원 및 학생의 수로 한정한다.</p> <p>비고2)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매체의 수는 계약시 지정한 45개 매체로 한정한다.</p> <p>7.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매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패키지 구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 구분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 구분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일반매체 |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패키지 구성 |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 구분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구분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일반매체 |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패키지 구성 |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제7조(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4)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7조(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내부직원 수</th> <th>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그룹</td> <td>3,000명 이상</td> <td>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2그룹</td> <td>2,000명~2,999명</td> <td>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3그룹</td> <td>1,000명~1,999명</td> <td>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4그룹</td> <td>500명~999명</td> <td>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5그룹</td> <td>100명~499명</td> <td>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6그룹</td> <td>1~99명</td> <td>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p>비고1)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p>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 내부직원 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1그룹 | 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2그룹 | 2,000명~2,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3그룹 | 1,000명~1,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4그룹 | 500명~9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5그룹 | 100명~4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6그룹 | 1~99명 |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비고2)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p> <p>비고3)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비고4)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p> |

제8조(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51개 이상 |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41~5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31~4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21~3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11~2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1~1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2)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2.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선택 매체수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 1그룹 | 51개 이상 | 9,900,000원 |
| 2그룹 | 41~50개 | 8,800,000원 |
| 3그룹 | 31~40개 | 7,700,000원 |
| 4그룹 | 21~30개 | 6,600,000원 |
| 5그룹 | 11~20개 | 5,500,000원 |
| 6그룹 | 1~10개 | 4,400,000원 |

3. 수집된 뉴스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 회원수(인원)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 1그룹 | 3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 회원수(인원)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5그룹 |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공공도서관의 회원수는 공공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른다.

비고2) 공공도서관은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4. 수집된 뉴스를 대학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 회원수(인원)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1그룹 | 25,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30,800,000원 중 많은 금액 |
| 2그룹 | 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 3그룹 | 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 4그룹 | 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 5그룹 |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비고1) 대학도서관의 회원수는 대학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르되 그 중 교직원 및 재학생 수만 합산한다.

비고2) 대학도서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8조(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선택 매체수</th> <th>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그룹</td> <td>51개 이상</td> <td>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2그룹</td> <td>41~50개</td> <td>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3그룹</td> <td>31~40개</td> <td>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1그룹 | 51개 이상 |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 2그룹 | 41~5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 3그룹 | 31~4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
|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1그룹 | 51개 이상 |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2그룹 | 41~5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3그룹 | 31~4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선택 매체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21~3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p>비고1)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계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계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p> <p>비고2)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p> <p>2.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선택 매체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51개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9,9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41~5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8,8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31~4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7,7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21~3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6,6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4,400,000원</td> </tr> </tbody> </table> <p>3. 수집된 뉴스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하는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회원수(인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00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그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td> </tr> </tbody> </table> <p>비고1) 공공도서관의 회원수는 공공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른다.</p> <p>비고2) 공공도서관은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 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p> | |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4그룹 | 21~3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 5그룹 | 11~2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 6그룹 | 1~1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1그룹 | 51개 이상 | 9,900,000원 | 2그룹 | 41~50개 | 8,800,000원 | 3그룹 | 31~40개 | 7,700,000원 | 4그룹 | 21~30개 | 6,600,000원 | 5그룹 | 11~20개 | 5,500,000원 | 6그룹 | 1~10개 | 4,400,000원 | 회원수(인원)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1그룹 | 3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2그룹 |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3그룹 |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4그룹 |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5그룹 |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6그룹 | 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그룹 | 21~3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그룹 | 11~2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그룹 | 1~10개 |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택 매체수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그룹 | 51개 이상 | 9,9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그룹 | 41~50개 | 8,8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그룹 | 31~40개 | 7,7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그룹 | 21~30개 | 6,6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그룹 | 11~20개 | 5,5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그룹 | 1~10개 | 4,4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수(인원)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그룹 | 33,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그룹 |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그룹 |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그룹 |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그룹 |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그룹 | 3,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4. 수집된 뉴스를 대학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장치에 전송하는 경우 | | |
| | 회원수(인원) | | |
| | 사용료(월별 판매액 기준) | | |
| | 1그룹 | 25,000명 이상 | 판매금액의 70% 또는 30,8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2그룹 | 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3그룹 | 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
| | 4그룹 | 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5그룹 |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
| 6그룹 | 5,000명 미만 |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 |
| <p>비고1) 대학도서관의 회원수는 대학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르되 그 중 교직원 및 재학생 수만 합산한다.</p> <p>비고2) 대학도서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회원 이외의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비고3) 회원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p> | | | |

제9조 (뉴스의 복제 및 배포)

1. 이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을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수량 분류 | 사용료(기사 1건당) | | | | 사용예시 |
|----------|---------------------------------|----------------|----------------|------------|--|
| | 5천부 미만 | 5천부~ 1만부 미만 | 1만부~ 5만부 미만 | 5만부 이상 | |
| 출판 | 150,000원 | 35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
| 광고 | 300,000원 | 7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카탈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 |
| 온라인 이용 |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 | | |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게재 |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2.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보도사진을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별 보도사진 1건당 판매금액의 62%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9조 (뉴스의 복제 및 배포)</p> <p>1. 이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을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수량 분류</th> <th colspan="4">사용료(기사 1건당)</th> <th rowspan="2">사용예시</th> </tr> <tr> <th>5천부 미만</th> <th>5천부~ 1만부 미만</th> <th>1만부~ 5만부 미만</th> <th>5만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출판</td> <td>150,000원</td> <td>350,000원</td> <td>600,000원</td> <td>1,000,000원</td> <td>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td> </tr> <tr> <td>광고</td> <td>300,000원</td> <td>700,000원</td> <td>1,200,000원</td> <td>2,000,000원</td> <td>카탈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td> </tr> <tr> <td>온라인 이용</td> <td colspan="4">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td> <td>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게재</td> </tr> </tbody> </table> <p>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p> <p>2.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보도사진을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별 보도사진 1건당 판매금액의 62%</p> | 수량 분류 | 사용료(기사 1건당) | | | | 사용예시 | 5천부 미만 | 5천부~ 1만부 미만 | 1만부~ 5만부 미만 | 5만부 이상 | 출판 | 150,000원 | 35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 광고 | 300,000원 | 7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카탈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 | 온라인 이용 |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 | | |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게재 |
| 수량 분류 | 사용료(기사 1건당) | | | | 사용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천부 미만 | 5천부~ 1만부 미만 | 1만부~ 5만부 미만 | 5만부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판 | 150,000원 | 35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고 | 300,000원 | 7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카탈로그, 팸플릿, 브로슈어, 전단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이용 |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 | | |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업무를 제공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20% 또는 22,000원 중 많은 금액
2.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면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27,500원 중 많은 금액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41,250원 중 많은 금액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10조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업무를 제공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20% 또는 22,000원 중 많은 금액 2.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면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27,500원 중 많은 금액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41,250원 중 많은 금액 |

제11조 (해외 서비스)

- ①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11조 (해외 서비스) ①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제12조 (판매촉진 등)

- ①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제공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 ② 제1항의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무료 제공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12조 (판매촉진 등) ①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제공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무료 제공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

제13조 (사용료 징수) 재단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제13조 (사용료 징수) 재단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 사용료)

-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제7조(사용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제6조(사용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p>제14조(기타 사용료)</p> <p>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p> |

제15조(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 ①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10.11.01., 신설) | 제7조(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제15조(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①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해당 조문 없음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1차 개정 (2010.11.01., 신설) | 제8조(사용료의 변경)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는, 거래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 〈삭 제〉 |

제16조 (가산금)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의 이용내역(계약서, 계정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 외의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계정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계정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2.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매체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매체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 범위를 초과하는 기간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범위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4. 소비자에게 계정의 중복접속을 허용한 경우
중복접속을 허가한 계정이 포함된 계약의 총 계약금액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5.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미제출·누락 계약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계약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6.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발생한 해당 매출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18.07.25., 신설) | <p>제16조(가산금)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는 뉴스저작물의 이용내역(계약서, 계정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 외의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계정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계정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2.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매체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매체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 범위를 초과하는 기간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범위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20%의 가산금을 부과함 4. 소비자에게 계정의 중복접속을 허용한 경우, 중복접속을 허가한 계정이 포함된 계약의 총 계약금액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5.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미제출·누락 계약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계약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6.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발생한 해당 매출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제1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신탁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제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u>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u> 의 의결을 거쳐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제1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 각 조에서 재단이 정하기로 규정된 사항 및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신탁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u>제10조(시행세칙)</u>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u>제18조(시행세칙)</u>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2006.06.0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0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2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06.06.07., 제정 | 부칙(2006.06.0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1차 개정 (2010.11.01., 일부개정) | 부칙(2006.06.0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0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차 개정 (2018.07.25., 일부개정) | 부칙(2006.06.0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0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2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1



한국문화정보원

1. 사용료 징수규정(2021.01.05. 개정)
2. 연혁집(제정~제2차 개정)

2013년 09월 23일 제정 2021년 01월 05일 개정
2015년 03월 0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료 징수)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음악저작물 사용료

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비고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비고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저작물의 단가"는 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비고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고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

제4조(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곡당 복제사용료 =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기여계수 ÷ 1매당수록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곡당 사용료 × 수록곡수

비고1)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

2.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출고가 × 기여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까지 | 6,0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2,0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 까지 | 2,4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4,8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회비 × 3.5% ÷ 수록곡수 × 50/100

비고2) “판매수량”은 회원수를 말한다.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 까지 | 1,0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2,0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회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 까지 | 5,0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0,0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 판매가격 × 5% ×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 수량

비고1)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비매용 출판물에 대하여 1부 1곡당 하한가는 5원으로 한다.

3.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10,000부 까지 | 30,000부 까지 | 50,000부 까지 | 100,000부 까지 | 300,000부 까지 | 500,000부 까지 | 500,000부 초과 |
|---------------|---------------|---------------|----------------|----------------|----------------|----------------|
| 7,500원 | 15,000원 | 25,000원 | 40,000원 | 60,000원 | 75,000원 | 100,000원 |

제3장 어문저작물 사용료

제5조(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 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6,250원 |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21,000원 |
| 1연 이용시 | 15,750원 |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전편 이용시 | 52,500원 |
| 부분 이용시 (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비고1) 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

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비고1) 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 연간 사용료 |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8,925원 |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7,350원 |
| 1연 이용시 | 5,250원 |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 연간 사용료 |
| 전편 이용시 | 17,850원 |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 연간 사용료 |
| 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제4장 사진·미술 저작물 사용료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신문광고 | 중앙지(일간/스포츠) | 돌출 1-9단 10-15단 |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 150,000원 175,000원 |
| |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 | 150,000원 | 100,000원 |
| 잡지광고 |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 | 225,000원 150,000원 | 150,000원 100,000원 |
| 차량광고 | 기차, 지하철, 버스 등 | 6개월 미만 | 200,000원 | 150,000원 |
| | | 6개월 이상 | 250,000원 | 200,000원 |
| TV광고(CF) |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200,000원 300,000원 | |
| 카탈로그 | 표지(표1) 내지(표2~4) | | 15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 | | | | |
| 날장인쇄물 |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 | 100,000원 | |
| 포스터 |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 | 150,000원 250,000원 | 100,000원 150,000원 |
| | | | | |
| 캘린더 |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 1만부 미만 | 250,000원 | |
| | | 5만부 미만 | 300,000원 | |
| | | 5만부 이상 | 350,000원 | |
| 캘린더 | 12매철(벽걸이용) | 1만부 미만 | 225,000원 | |
| | | 5만부 미만 | 275,000원 | |
| | | 5만부 이상 | 325,000원 | |
| 캘린더 | 탁상용 | 1만부 미만 | 150,000원 | |
| | | 5만부 미만 | 175,000원 | |
| | | 5만부 이상 | 200,000원 | |
|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 |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
| 간판 | 1개 장소 2개장소 이상 | | 250,000원 300,000원 | |
| | | | | |
| 디스플레이 | 1개 장소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175,000원 225,000원 | |
| |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225,000원 275,000원 | |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POP, 데코 레이션 | 1개 장소 2개장소 이상 | | 150,000원 200,000원 | |
| 그 밖의 판촉물 |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 | 100,000원 | |
| 패키지 |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 | 175,000원 | |
| 액자용 인화 | 20"×30" (50.8×76.2cm) 해당 | | 125,000원 | |
|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전 | | | 75,000원 | |
| 인터넷 |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 |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 50,000원 |
|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 | | 110,000원 | |

비고1)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참고서, 서적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60,000원 |
| 단행본, 원간지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
| 백과사전, 도감, 사전 | 표지 내지 | | 75,000원 50,000원 | |
| 사보, 뉴스레터, 기내지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
| 신문, 기관지 등(기사용) |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 | 100,000원 75,000원 | |
| 화보 | | | 100,000원 | |
| CD타이틀, 노래방배경 | | | 8,200원 | |

제5장 보 칙

제7조(그 밖의 사용료) 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정보원은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0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8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013. 9. 2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국문화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 제1차 개정 (2015.03.0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용료 징수)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제2조(사용료 징수) “센터”가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차 개정 (2015.03.06., 일부개정) | 제2조(사용료 징수)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장 음악저작물 사용료

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비고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비고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저작물의 단가”는 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비고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고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 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

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p>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p> <p>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p>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p> <p>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p> <p>비고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비고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p> <p>비고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센터”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p> <p>비고4) “월정액”과“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p>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p>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p> <p>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p> <p>비고1) “저작물의 단가”는 “센터”와 공공저작권을 센터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p> <p>비고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센터와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교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p> <p>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교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p> <p>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작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교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교 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p> <p>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p> |
| <p>제1차 개정 (2015.03.06., 일부개정)</p> | <p>제3조(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비교1) “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2) “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비교3) “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비교4) “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p>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고1) “저작물의 단가”는 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비고2) “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비고3) 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p>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고1)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p>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고1)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p>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p> |

제4조(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곡당 복제사용료 =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기여계수 ÷ 1매당수록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곡당 사용료 × 수록곡수

비고1)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

2.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출고가 × 기여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비고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까지 | 6,0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2,0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 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까지 | 2,4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4,8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회비 × 3.5% ÷ 수록곡수 × 50/100

비고2) “판매수량”은 회원수를 말한다.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까지 | 1,000원 |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2,0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회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10곡까지 | 5,000원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0,000원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 판매가격 × 5% ×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비고1)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비매용 출판물에 대하여 1부 1곡당 하한가는 5원으로 한다.

3.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 10,000부까지 | 30,000부까지 | 50,000부까지 | 100,000부까지 | 300,000부까지 | 500,000부까지 |
|-----------|-----------|-----------|------------|------------|------------|
| 7,500원 | 15,000원 | 25,000원 | 40,000원 | 60,000원 | 75,000원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p>제4조(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text{출고가} \times \text{기여계수} \times (\text{승인곡수}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할인율}$ 비교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비교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p> <p>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text{출고가} \times \text{기여계수} \times (\text{승인곡수} \div \text{수록곡수}) \times \text{제작수량}$ 비교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p> <p>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1\text{곡당 복제사용료} = \text{음반판매가}(\text{정찰가격} - \text{부가세}) \times \text{기여계수} \div 1\text{매당수록곡수} \times \text{판매수량}$ 비교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p> <p>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text{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text{곡당 사용료} \times \text{수록곡수}$ 비교1)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p> <p>2. $\text{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text{출고가} \times \text{기여계수}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times \text{제작수량}$ 비교1)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p> <p>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text{출고가} \times 4\% \times \text{음악저작물 관리비율} \times \text{제작수량} \times \text{조정계수}$ 비교1) “조정계수”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p> <p>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의 경우 가. $\text{신곡사용료} : \text{곡당단가} \times \text{이용곡수} \times \text{판매수량}$ 비교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times 4.5\% \div \text{수록곡수}$</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p> <table border="1" data-bbox="478 367 1246 596">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th> </tr> <tr> <th>이용 곡수</th> <th>월정 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10곡까지</td> <td>6,000원</td> </tr> <tr> <td>10곡 초과 20곡 까지</td> <td>12,000원</td> </tr> <tr> <td>20곡 초과 80곡 까지</td> <td>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r> <td>80곡 초과시</td> <td>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p>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용의 경우</p> <p>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p> <p>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p> <p>-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p> <p>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p> <table border="1" data-bbox="478 944 1246 1172">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th> </tr> <tr> <th>이용 곡수</th> <th>월정 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10곡까지</td> <td>2,400원</td> </tr> <tr> <td>10곡 초과 20곡 까지</td> <td>4,800원</td> </tr> <tr> <td>20곡 초과 80곡 까지</td> <td>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r> <td>80곡 초과시</td> <td>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p>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p> <p>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p> <p>비고1) “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p> <p>- 회비 × 3.5% ÷ 수록곡수 × 50/100</p> <p>비고2) “판매수량”은 회원수를 말한다.</p> <p>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p> <table border="1" data-bbox="478 1520 1246 1749">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th> </tr> <tr> <th>이용 곡수</th> <th>월정 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10곡까지</td> <td>1,000원</td> </tr> <tr> <td>10곡 초과 20곡 까지</td> <td>2,000원</td> </tr> <tr> <td>20곡 초과 80곡 까지</td> <td>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r> <td>80곡 초과시</td> <td>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10곡까지 | 6,000원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2,000원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10곡까지 | 2,400원 | 10곡 초과 20곡 까지 | 4,800원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10곡까지 | 1,000원 | 10곡 초과 20곡 까지 | 2,000원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까지 | 6,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2,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까지 | 2,4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4,8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까지 | 1,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2,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화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 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 (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p> <p>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p> <p> 비고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 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p> <p>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 곡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정 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곡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곡 초과 20곡 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곡 초과 80곡 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0곡 초과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td> </tr> </tbody> </table> <p>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1. 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p> 가. 소비자 판매가격 × 5% ×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p> <p> 비고1) “음악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p> <p>2. 비매용 출판물에 대하여 1부 1곡당 하한가는 5원으로 한다.</p> <p>3.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경우</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10,000부 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30,000부 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50,000부 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100,000부 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300,000부 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500,000부 까지</th> <th style="text-align: center;">500,000부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body> </table>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10곡까지 | 5,000원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0,000원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10,000부 까지 | 30,000부 까지 | 50,000부 까지 | 100,000부 까지 | 300,000부 까지 | 500,000부 까지 | 500,000부 초과 | 7,500원 | 15,000원 | 25,000원 | 40,000원 | 60,000원 | 75,000원 | 100,000원 |
|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곡수 | 월정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까지 | 5,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곡 초과 20곡 까지 | 1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곡 초과 80곡 까지 |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곡 초과시 |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부 까지 | 30,000부 까지 | 50,000부 까지 | 100,000부 까지 | 300,000부 까지 | 500,000부 까지 | 500,000부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7,500원 | 15,000원 | 25,000원 | 40,000원 | 60,000원 | 75,000원 | 1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어문저작물 사용료

제5조(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

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6,250원 |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21,000원 |
| 1연 이용시 | 15,750원 |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전편 이용시 | 52,500원 |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비고1) 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

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비고1) 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8,925원 |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7,350원 |
| 1연 이용시 | 5,250원 |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 전편 이용시 | 17,850원 |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 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p>제5조(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p> <p>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p>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p>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p> <table border="1" data-bbox="454 379 1243 572">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th> </tr> <tr> <th>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th> <th>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1/2편 이상 - 1편 이용시</td> <td>26,250원</td> </tr> <tr> <td>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td> <td>21,000원</td> </tr> <tr> <td>1연 이용시</td> <td>15,750원</td> </tr> </tbody> </table> <p>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p> <table border="1" data-bbox="454 654 1243 811">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th> </tr> <tr> <th>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th> <th>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전편 이용시</td> <td>52,500원</td> </tr> <tr> <td>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td> <td>1,680원</td> </tr> </tbody> </table> <p>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p> <table border="1" data-bbox="454 892 1243 1005">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th> </tr> <tr> <th>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th> <th>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200자 원고지 1매당</td> <td>1,680원</td> </tr> </tbody> </table> <p>비고1) 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p> <p>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비고1) 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p> <p>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p> <table border="1" data-bbox="454 1304 1243 1496">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th> </tr> <tr> <th>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th> <th>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1/2편 이상 - 1편 이용시</td> <td>8,925원</td> </tr> <tr> <td>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td> <td>7,350원</td> </tr> <tr> <td>1연 이용시</td> <td>5,250원</td> </tr> </tbody> </table> <p>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p> <table border="1" data-bbox="454 1588 1243 1745"> <thead> <tr> <th colspan="2">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th> </tr> <tr> <th>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th> <th>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전편 이용시</td> <td>17,850원</td> </tr> <tr> <td>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td> <td>575원</td> </tr> </tbody> </table>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6,250원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21,000원 | 1연 이용시 | 15,750원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전편 이용시 | 52,500원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8,925원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7,350원 | 1연 이용시 | 5,250원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전편 이용시 | 17,850원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6,2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21,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연 이용시 | 15,7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편 이용시 | 52,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자 원고지 1매당 | 1,68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8,925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 7,3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연 이용시 | 5,2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편 이용시 | 17,85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 | <p>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p> <table border="1" data-bbox="454 373 1245 493">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54 373 1245 413">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th> </tr> <tr> <th data-bbox="454 413 919 453">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th> <th data-bbox="919 413 1245 453">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4 453 919 493">200자 원고지 1매당</td> <td data-bbox="919 453 1245 493">575원</td> </tr> </tbody> </table>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 | | | | | | |
|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 (10,000부 이내) | 사용료 | | | | | | |
| 200자 원고지 1매당 | 575원 | | | | | | |

제4장 사진·미술 저작물 사용료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신문광고 | 중앙지(일간/스포츠) | 돌출 | 150,000원 | 150,000원 |
| | | 1-9단 | 225,000원 | 175,000원 |
| | | 10-15단 | 300,000원 | |
| |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 | 150,000원 | 100,000원 |
| 잡지광고 |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 | 225,000원 | 150,000원 |
| | | | 150,000원 | 100,000원 |
| 차량광고 | 기차, 지하철, 버스 등 | 6개월 미만 | 200,000원 | 150,000원 |
| | | 6개월 이상 | 250,000원 | 200,000원 |
| | TV광고(CF) | 6개월 미만 | 200,000원 | |
| | | 6개월 이상 | 300,000원 | |
| 카탈로그 | 표지(표1) 내지(표2~4) | | 150,000원 | 100,000원 |
| | | | 100,000원 | |
| 날장인쇄물 |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 | 100,000원 | |
| 포스터 |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 | 150,000원 | 100,000원 |
| | | | 250,000원 | 150,000원 |
| 캘린더 |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 1만부 미만 | 250,000원 | |
| | | 5만부 미만 | 300,000원 | |
| | | 5만부 이상 | 350,000원 | |
| | 12매철(벽걸이용) | 1만부 미만 | 225,000원 | |
| | | 5만부 미만 | 275,000원 | |
| | | 5만부 이상 | 325,000원 | |
| 탁상용 | 1만부 미만 | 150,000원 | | |
| | 5만부 미만 | 175,000원 | | |
| | 5만부 이상 | 200,000원 | | |
|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 | 3개월 미만 | 200,000원 | 150,000원 |
| | | 6개월 미만 | 250,000원 | 200,000원 |
| | | 6개월 이상 | 300,000원 | 250,000원 |
| 간판 | 1개 장소 2개장소이상 | | 250,000원 | |
| | | | 300,000원 | |
| 디스플레이 | 1개 장소 | 3개월 미만 | 175,000원 | |
| | | 3개월 이상 | 225,000원 | |
| | 2개 장소이상 | 3개월 미만 | 225,000원 | |
| | | 3개월 이상 | 275,000원 | |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POP, 데코 레이션 | 1개 장소 2개장소 이상 | | 150,000원 200,000원 | |
| 그 밖의 판촉물 |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 | 100,000원 | |
| 패키지 |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 | 175,000원 | |
| 액자용 인화 | 20"×30" (50.8×76.2cm) 해당 | | 125,000원 | |
| |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전 | | 75,000원 | |
| 인터넷 |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 |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 50,000원 |
| |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 | 110,000원 | |

비고1)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참고서, 서적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60,000원 |
| 단행본, 원간지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
| 백과사전, 도감, 사전 | 표지 내지 | | 75,000원 50,000원 | |
| 사보, 뉴스레터, 기내지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
|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 | 100,000원 75,000원 | |
| 화보 | | | 100,000원 | |
| CD타이틀, 노래방배경 | | | 8,200원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2013.09.23., 제정 |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 | | | |
| |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신문광고 | 중앙지(일간/스포츠) | 돌출 | 150,000원 | 150,000원 175,000원 |
| | | | 1-9단 10-15단 | 225,000원 300,000원 | |
| | |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 | 150,000원 | 100,000원 |
| | 잡지광고 |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 | 225,000원 150,000원 | 150,000원 100,000원 |
| | | | 차량광고 | 기차, 지하철, 버스 등 | 6개월미만 |
| | 6개월이상 | 250,000원 | | | 200,000원 |
| | | TV광고(CF) | 6개월미만 6개월이상 | 200,000원 300,000원 | |
| | 카탈로그 | 표지(표1) 내지(표2~4) | | 15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 | | | 날장인쇄물 |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 |
| | 포스터 |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 | 150,000원 250,000원 | 100,000원 150,000원 |
| | | | 캘린더 |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 1만부미만 |
| | 5만부미만 | 300,000원 | | | |
| | 5만부이상 | 350,000원 | | | |
| | | 12매철(벽걸이용) | 1만부미만 | 225,000원 | |
| | 5만부미만 | | 275,000원 | | |
| | 5만부이상 | | 325,000원 | | |
| | | 탁상용 | 1만부미만 | 150,000원 | |
| 5만부미만 | 175,000원 | | | | |
| 5만부이상 | 200,000원 | | | | |
| 간판 |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 3개월미만 | 200,000원 | 150,000원 | |
| | | 6개월미만 6개월이상 | 250,000원 300,000원 | 200,000원 250,000원 | |
| | 1개 장소 2개장소이상 | | 250,000원 300,000원 | | |
| | | 1개 장소 | 3개월미만 | 175,000원 | |
| | | | 3개월이상 | 225,000원 | |
| | 2개 장소이상 | 3개월미만 | 225,000원 | | |
| | | | 3개월이상 | 275,000원 | |
| | POP, 데코 레이션 | | 150,000원 | | |
| | | | 1개 장소 2개장소이상 | 200,000원 | |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 |
|---|-----------------|---|-------------|---|-----------|
|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그 밖의 판촉물 |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 | 100,000원 | |
| | 패키지 |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 | 175,000원 | |
| | 액자용 인쇄 | 20 * 30 * (50.8×76.2cm) 해당 | | 125,000원 | |
| | |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전 | | 75,000원 | |
| | 인터넷 |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 |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 50,000원 |
| | |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 | 110,000원 | |
| 비고1)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 | | | | |
|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용도 | 구분 | 상세구분 | 메인 | 서브 |
| | 참고서, 서적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60,000원 |
| | 단행본, 원간지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
| | 백과사전, 도감, 사전 | 표지 내지 | | 75,000원 50,000원 | |
| | 사보, 뉴스레터, 기내지 | 표지 내지 | | 100,000원 75,000원 | |
| |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 | 100,000원 75,000원 | |
| | 화보 | | | 100,000원 | |
| | CD타이틀, 노래방배경 | | | 8,200원 | |

제5장 보 칙

제7조(그 밖의 사용료)

- 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p>제7조(그 밖의 사용료)</p> <p>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한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p> |
| 제1차 개정 (2015.03.06., 일부개정) | <p>제7조(그 밖의 사용료)</p> <p>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한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p> |
| 제2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p>제7조(그 밖의 사용료)</p> <p>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p> |

제8조(사용료의 감면)

- ① 정보원은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0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8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제2차 개정 (2021.01.05., 신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정보원은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0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8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제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제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제9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 제2차 개정 (2021.01.05., 일부개정) | 제10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 연월 | 해당 조문 |
|-------------------------------|---|
| 2013.09.23., 제정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1차 개정 (2015.03.06., 일부개정) | <u>제1조(시행일)</u>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연혁집

제 2 권
어문·방송·영상
공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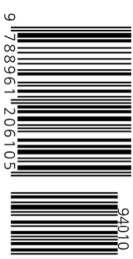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진주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서울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16층 대표번호 02.2669.0010

대표번호 055.792.0000



9 788961 206105
ISBN 978-89-6120-610-5
ISBN 978-89-6120-038-7 (세트)

비매품/무료

940110